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골드만삭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골드만삭스 글로벌리츠 부동산 투자신탁 [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 글로벌리츠 부동산 투자신탁 [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골드만삭스 글로벌리츠 부동산 투자신탁 [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사항은 협회 (www.kofia.or.kr) 또는 집합투자업자 (www.goldman-sachs.co.kr) 의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4.	작 성 기 준 일 :	2011 년 5 월 27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1 년 5 월 27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 총액]	수익증권 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이므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입금 금액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1
3. 모집 예정 금액 1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5. 인수에 관한 사항 2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2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3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3
4. 집합투자업자 4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4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6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7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7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3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6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27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33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4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41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43

1. 재무정보 43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46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47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54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5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57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59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63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63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68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69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73

[별첨1] 당해 투자신탁과 관련한 이해상충의 일반적 분류 74

[별첨2] 펀드용어의 정리 88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골드만삭스 글로벌리츠 부동산 투자신탁 [재간접형] (4925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재간접형 (집합투자재산의 4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용어에 관한 사항은 “별첨2”의 용어풀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 예정 금액 : 10조좌

주1)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모집예정금액까지 추가모집이 가능합니다.
2) 본 집합투자기구의 판매 개시 이후 당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일정한 규모 이하가 되는 경우 등 법령 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집합투자증권은 판매 개시 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동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을 기준으로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goldman-sachs.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매입)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1) 기준시간(17시) 이전에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당일 포함)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배정됩니다.
(2) 기준시간(17시) 경과 후에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당일 포함)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배정됩니다.

* 위 (1)항 및 (2)항에 기재된 매입 기준가격 적용시점은 2010년 3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 2010년 3월 15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대해서는 변경전 기준가격 적용시점이 적용됩니다(즉, 기준시간(17시) 이전에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위 기준시간(17시) 경과 후에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명칭)	투자신탁 코드
골드만삭스 글로벌리츠 부동산 투자신탁 [재간접형]	49250
A	49251
C1	62718
C2	99630
C3	99631
C4	99632
C5	99633
I	51191
W	없음

주1) 종류 W는 신탁계약서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코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5. 5.30	맥쿼리-IMM 글로벌리츠(Global REITs) 재간접 투자신탁 설정, 종류 A 운용 시작
2005. 9.22	맥쿼리-IMM 글로벌리츠(Global REITs) 재간접 투자신탁 종류 I 운용 시작
2006. 12.4	맥쿼리-IMM 글로벌리츠(Global REITs) 재간접 투자신탁 종류 C 운용 시작
2007. 9. 28	골드만삭스 글로벌리츠(Global REITs) 재간접 투자신탁으로 명칭 변경
2008. 2. 26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조규상 → 허진욱)
2008. 12. 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허진욱 → 김민구)
2009.3.12.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민구 → 허진욱)
2009.4.	골드만삭스 글로벌리츠 부동산 투자신탁 [재간접형]으로 명칭 변경
2011.1.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허진욱 → 이승우, 양진모)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26 흥국생명빌딩 19층 (110-786) (대표전화 : 02-3788-14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래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관련 주식 등)에 대한 운용업무는 Macquarie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이 위탁받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동 운용업무는 업무위탁계약에 의거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L.P., Goldman Sachs (Singapore) Pte.,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Co., Ltd., Goldman Sachs (Asia) L.L.C. 및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Brasil LTDA가 담당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1) 이 투자신탁

(2011.02.28 현재, 단위: 억원)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이승우	32	상무	1.5	3,145	2004.01~2005.03 우리투자증권 자산관리 2005.04~2007.09 맥쿼리 IMM 주식운용팀
양진모	37	상무	0.5	741	2000.02~2010.06 SK 증권 리서치센터

주 1)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주 2) 당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 3) 상기인은 각 주식 및 채권 운용팀 소속 운용전문인력입니다.

(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종래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관련 주식 등)에 대한 운용업무는 Macquarie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책임운용전문인력: David Kivell)이 위탁받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동 운용업무를 업무위탁계약에 의거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L.P., Goldman Sachs (Singapore) Pte.,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Co., Ltd., Goldman Sachs (Asia) L.L.C. 및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Brasil LTDA가 담당합니다.

(가)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

(2011년 3월 31일 현재)

성명	소속부서	직위	운용중인 자산 규모 (단위:US$백만)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Frankie Chun Wah Lee	펀더멘탈 주식팀	Vice President	2,266.2	14년

※ 이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업무 중 미달러화 헤지(미달러화/원화 헤지업무는 주로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수행함)를 포함하는 하위 운용업무는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에게 위탁되어 동 회사의 펀더멘탈 주식팀 및 채권팀에서 담당하며, 그 책임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정보는 위와 같습니다.

(나)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L.P.

(2011년 3월 31일 현재)

성명	소속부서	직위	운용중인 자산 규모 (단위:US$백만)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Nora Creedon	펀더멘탈 주식팀	Vice President	2,266.2	10년
Timothy Ryan	펀더멘탈 주식팀	Vice President	2,266.2	15년

※ 이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업무 중 북미 지역 리츠 자산의 하위 운용업무는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L.P.에게 위탁되어 동 회사의 펀더멘탈 주식팀에서 담당하며, 그 책임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정보는 위와 같습니다.

(다) Goldman Sachs (Singapore) Pte.

(2011년 3월 31일 현재)

성명	소속부서	직위	운용중인 자산 규모 (단위:US$백만)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Frankie Chun Wah Lee	펀더멘탈 주식팀	Vice President	2,266.2	14년

※ 이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업무 중 일본 제외 아시아 지역 리츠 자산의 하위 운용업무는 Goldman Sachs (Singapore) Pte.에게 위탁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동 운용업무는 동 회사의 펀더멘탈 주식팀에서 담당하며, 그 책임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정보는 위와 같습니다.

(라)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Co., Ltd.

(2011년 3월 31일 현재)

성명	소속부서	직위	운용중인 자산 규모 (단위:US$백만)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Tetsuo Yanagawa	펀더멘탈 주식팀	Vice President	2,266.2	12년

※ 이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업무 중 일본 내 리츠 자산의 하위 운용업무는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Co., Ltd.에게 위탁되어 동 회사의 펀더멘탈 주식팀에서 담당하며, 그 책임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정보는 위와 같습니다.

(마) Goldman Sachs (Asia) L.L.C.

(2011년 3월 31일 현재)

성명	소속부서	직위	운용중인 자산 규모 (단위:US$백만)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Frankie Chun Wah Lee	펀더멘탈 주식팀	Vice President	2,266.2	14년

※ 이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업무 중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리츠 자산의 하위 운용업무는 Goldman Sachs (Asia) L.L.C.에게 위탁하여 동 회사의 펀더멘탈 주식팀에서 담당하며, 그 책임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정보는 위와 같습니다.

(바)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Brasil LTDA

(2011년 3월 31일 현재)

성명	소속부서	직위	운용중인 자산 규모 (단위:US$백만)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Gabriella Antici	펀더멘탈 주식팀	Managing Director	1,116	22년

※ 이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업무 중 브라질 지역 리츠 자산의 하위 운용업무는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Brasil LTDA에게 위탁되어 동 회사의 펀더멘탈 주식팀에서 담당하며, 그 책임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정보는 위와 같습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조규상	설정일 ~ 2008년 2월 25일
허진욱	2008년 2월 26일 ~ 2008년 11월 30일
김민구	2008년 12월 1일 ~ 2009년 3월 11일
허진욱	2009년 3월 12일 ~ 현재
이승우, 양진모	2011년 1월 3일자로 변경

주1) 최초설정일 이후 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부동산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재간접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 (펀드코드: 49251)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1 (펀드코드: 62718)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2 (펀드코드: 99630)	종류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3 (펀드코드: 99631)	종류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4 (펀드코드: 99632)	종류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5(펀드코드: 99633)	종류 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I (펀드코드: 51191)	가입자격은 납입금액이 10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되며,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W	증권회사의 일임형 Wrap,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주1) 종류별로 판매보수, 판매수수료의 차이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 W는 신탁계약서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설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은 외국법령에 의해 전세계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신탁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입니다. 호주, 미국의 REITs, 기타 지역의 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해외 재간접 투자신탁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투자 위험을 부담하며, 국내 및 국외의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변경은 제외)은 집합투자규약 변경을 통해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규약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 및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의 절차를 거칩니다.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의 취득한도에 관한 내용은 “나. 투자제한” 항목의 기재와 함께 이해되어야 합니다.

투자대상		취득한도	투자대상 내역
1	외국집합 투자증권등	50% 이상	부동산과 관련된,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이하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함). 국제적으로 인정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 및 12개월 이내에 상장 예정된 증권에 한함.
2	외국지분증권	30%이하	부동산과 관련된,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으로서 주권(해외주식예탁증서 포함),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이하 “외국지분증권”이라 함). 국제적으로 인정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 및 12개월이내에 상장 예정된 증권에 한함.
3	채무증권	40% 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무증권”이라 함)

투자대상		취득한도	투자대상 내역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함)
5	어 음	4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 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어음”이라 함)
6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등 법 제9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통화와 관련된 장내파생상품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함). 다만 통화 관련 장내파생상품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헷지 목적의 거래에 한함.
7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중,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헷지 목적의 거래 및 금리스왑거래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고 함).
8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10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1	단기대출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임.
12	양도성예금증서		
13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만기 1년 이내의 것에 한함
14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1호 내지 제7호의 취득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도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취득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 등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상기 제1호 내지 제7호의 취득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또는 법 제191조에 따른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아래 “나. 투자제한” 참고). 이때 집합투자업자는 “대량 환매청구” 또는 “대량 매수청구”를 이 투자신탁 자산의 10% 이상(판매회사 조정분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환매 청구 및 매수 청구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판매회사 조정분”이란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들로부터 받은 매입신청이나 환매신청에 기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을 한 이후에 판매회사가 이를 변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초과하거나 부족한 취득이나 처분을 한 상태가 생기는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 판매회사가 최초 매입분을 더 낮게 조정하여 최종 매입분이 최초 수령분보다 낮아지고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금액보다 낮아지게 되면,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에 사실상 초과취득을 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주문이 최초 매입분보다 낮게 조정되여 이 투자신탁이 초과취득을 한 상태가 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초과취득분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초과취득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 단락(8.나.(2)(가))에서 같음)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 이하 8.나.에서 같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을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특정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이하 "부동산개발회사"라 합니다)가 발행한 증권, 부동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이하 "유동화증권"이라 합니다)으로서 그 기초

자산의 합계액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합니다) 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유동화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부동산투자목적회사와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회사를 말합니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부동산 또는 법 시행령 제240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자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90 이상인 회사(이하 "부동산투자목적회사"라 합니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합니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함)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함)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함),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4)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함. 이하 동 단락(8.나.(2)(나))에서 같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함)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함)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만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함), 또는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함)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함)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2)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단, 위 1)호 각목 및 아래 각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위 1)호 가)목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함)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3)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를 포함함]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를 포함함]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하는 행위
2)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3)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

(라)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2) 법 제19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마)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또는 법 제191조에 따른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바)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함)하여서는 안됩니다.

(사)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함)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그 밖에 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하는 거래

(자) 집합투자업자는 위 (아)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차)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을 제외함)을 취득하여서는 안됩니다.

(카)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을 포함함)을 취득하여서는 안됩니다

(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그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취득 없이 위 (가), (나), (다)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파) 위 (가)의 1), 5) 내지 7), (나)의1), 2)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산의 50% 이상을 외국법령에 의해 상장된 부동산 관련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호주, 미국 REITs, 기타 지역의 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종래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관련 주식 등)에 대한 운용업무는 Macquarie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책임운용전문인력: David Kivell)이 위탁받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동 운용업무를 업무위탁계약에 의거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L.P., Goldman Sachs (Singapore) Pte.,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Co., Ltd., Goldman Sachs (Asia) L.L.C. 및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Brasil LTDA가 담당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외운용회사 변동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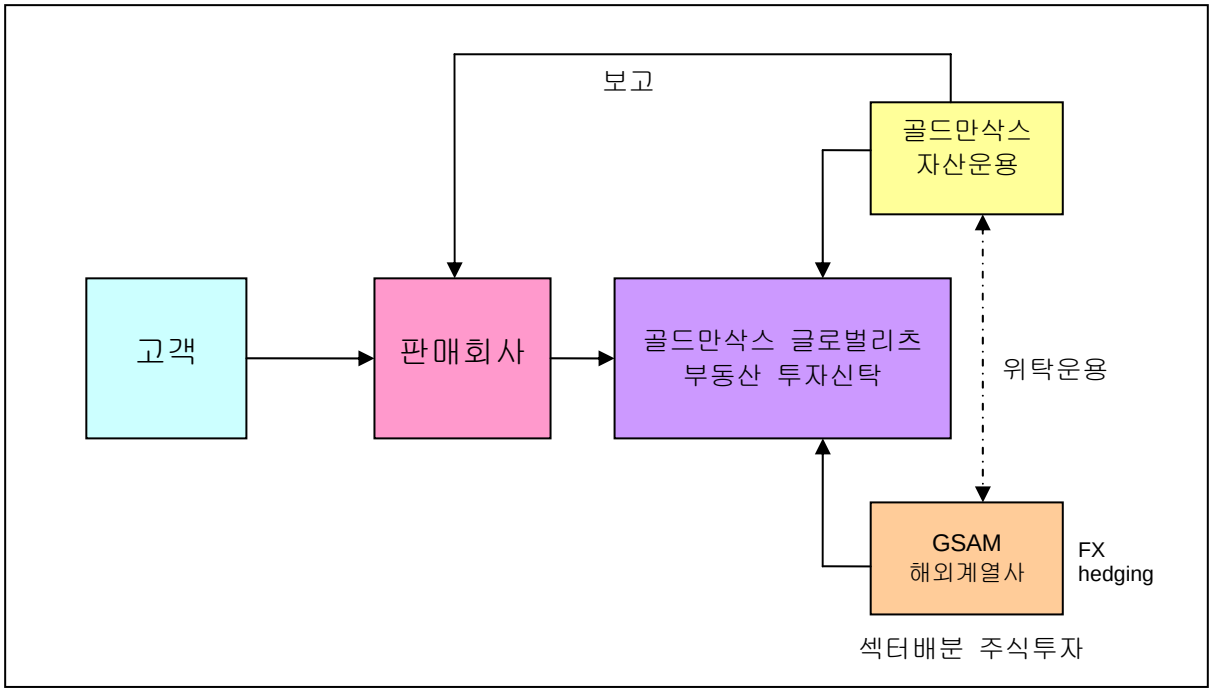

한편, 선도환거래 또는 선물환거래를 통해 글로벌 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관련 유가증권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위험을 일부 헤지할 예정입니다. 헤지 비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해외유가증권 투자전략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기초 여건 및 개별 산업에 대한 심층분석 토대로 우량 종목에 투자

이 투자신탁은 중장기적으로 투자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자, 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에 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은 여러 증권거래소(뉴욕, 홍콩, 호주, 런던 등)에 상장되어 거래됩니다.

<투자 프로세스>

지역별 자산배분 → **종목 선택** → **포트폴리오 구성** → **포트폴리오 관리**

- 지역별 자산배분: 정성적 분석 및 정량적 분석을 기초로 지역별 배분의 토대가 되는 포괄적인 총 수익 순위를 만들어 냄, 이익 배당과 성장이 주요 변수이지만 수익률 차이, 거시적 지표들 및 지역별 부동산 시장 원리와 지역별 요인들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주요 특징
- 종목선택 및 포트폴리오 구성: 지역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종목을 구성, 시장과의 상관관계 및 시장의 성숙도에 따른 종목 선정 및 종목 구성, 지역별 시장 성숙도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
- 포트폴리오 관리: 당사의 리스크 팀에 의해서 매일 포트폴리오를 모니터링 실시(Daily), 리스크 점검 (지역별 비중 / 종목 비중 / 현금 보유 비율 / 비교지수 보유 비중 / 비교지수 수익률 오차)

<자산배분 현황>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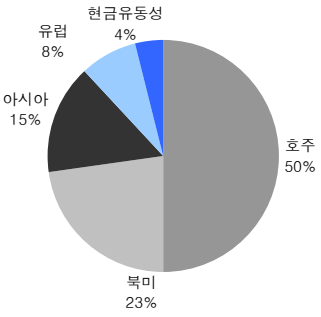

섹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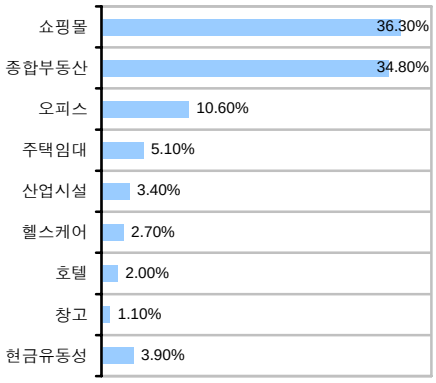

- 자료 출처: 골드만삭스자산운용, 기준일: 2010년 1월 31일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종목	비중	업종	지역
WESTFIELD GROUP	17.54%	쇼핑몰	호주
STOCKLAND TRUST GROUP	8.61%	종합부동산	호주
CFS Retail Property	7.33%	쇼핑몰	호주
Dexus Property Group	4.75%	종합부동산	호주
MIRVAC GROUP	2.94%	종합부동산	호주
GENERAL PROPERTY TRUST	2.91%	종합부동산	호주
SUN HUNG KAI PROP	2.80%	임대주택	홍콩
UNIBAIL Rodamco	2.25%	종합부동산	프랑스
SIMON PROPERTY GROUP	2.18%	쇼핑몰	미국
Goodman Group	1.81%	산업시설	호주

- 자료 출처: 골드만삭스자산운용, 기준일: 2009년 11월 30일

(2) 국내유가증권 투자전략

유동성 자산 위주의 안정적인 투자전략 구사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부를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 자산에 투자·운용하여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3) 환위험 관리 전략

통화 선물, 통화스왑, 선물환거래, 선도환거래 등을 이용하여 환위험의 90%~110%수준 헤지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관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성, 헤지수단 및 헷지 비용등을 고려하여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환헤지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해외펀드는 대부분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헤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순자산 평가액의 90%~110%수준에서 환헤지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는 환헤지의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4)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또는 새로운 비교 지수가 등장하는 경우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관련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왔으며, 현재는 50% FTSE EPRA NAREIT Australia Net Total Return Index (KRW hedged) + 50% FTSE EPRA NAREIT Developed ex-Australia KRW Net Total Return Index (KRW hedged)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정당시	50% UBS Australia Investors Total Return Index (KRW hedged) + 50% UBS Global(ex-Australia) Investors Total Return Index (KRW hedged)
2007.4.16.부터	50% FTSE EPRA NAREIT Australia Total Return Index (KRW hedged) + 50% FTSE EPRA NAREIT Global ex-Australia KRW Total Return Index (KRW hedged)
	변경사유 : UBS지수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블룸버그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수를 발표하는 FTSE 지수로 변경
2007.9.28.부터	50% FTSE EPRA NAREIT Australia Net Total Return Index (KRW hedged) + 50% FTSE EPRA NAREIT Global ex-Australia KRW Net Total Return Index (KRW hedged)
	변경사유 :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90%~110%까지 환 헤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헤지된 지수를 산출이 어려웠으나, 2007년 6월 30일부터 FTSE에서 FTSE EPRA NAREIT Australia index 및 FTSE EPRA NAREIT Global ex-Australia index의 원화로 헤지한 지수를 발표함에 따라 헤지된 지수로 변경.

2009.3.23.부터	50% FTSE EPRA NAREIT Australia Net Total Return Index (KRW hedged) + 50% FTSE EPRA NAREIT Developed ex-Australia KRW Net Total Return Index (KRW hedged)
	변경사유 : 단순 명칭 변경

(비교지수 및 펀드 수익률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위험관리

다양한 개별종목이 편입됨에 따라 개별종목 리스크 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의 사전목표 대비 실제 운용시 나타나는 초과수익, tracking error등이 목표대비 일정수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합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주로 전세계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형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미국, 호주 등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REITs 및 부동산 개발회사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성과는 동 주식의 가격변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당해 투자신탁은 REITs 및 부동산 개발회사 주식의 특별한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자의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국내 및 국외의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는 주식투자 관련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수익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수익자들은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에 기초하여 발행회사로부터 투자자금을 회수함에 있어서는, 그 순위가 동 발행회사가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발행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포함)의 변제보다 후순위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당해 투자신탁에 투자한다고 하여, 이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완전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 모델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투자자는 본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 외에 다른 종류의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나. 특수위험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의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투자금액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당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 (주로 해외 상장 부동산 펀드 혹은 주식)의 실적에 따라 투자신탁의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각 펀드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 손실을 입게 될 수 도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관련 종목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 정부정책, 경기사이클, 개별기업 및 Fund의 수익성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외부 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신탁재산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외국통화표시 자산으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방어(헤지)할 예정이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 및 시간차이에 따라 투자수익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외국 상장 부동산 관련 종목에 편입된 부동산 자산의 매매가 어려워 공정가격에 적당한 시간을 갖고 Rebalancing 및 청산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입과 환매가 자유로운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특성상 환매기간이 다른 투자신탁보다 길게 소요됩니다. 환매신청일로부터 판매회사의 영업일 기준으로 10영업일 후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투자신탁의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미래가격입니다. 즉, 투자자가 환매 청구하는 시점과 기준가격이 정해지는 시점의 차이로 의해 순자산가치가 투자자의 예상과 다르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위험	투자설명서의 조건에 따라 투자신탁은 주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양도가능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들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수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부동산 가치가 경기의 영향을 받는 특성(cyclical nature), 일반적인 경제상황 또는 지역적인 경제상황과 관련된 위험, 과밀건축 및 경쟁 증가, 재산세 및 운영비용 증가, 인구통계학적 임대수입이 인구통계에 따르거나 변동하는 점, 건축규제 법령의 변동, 사고 또는 수용 손실, 환경적 위험, 임대 제한 규정, 인접지역 가치 변동, 관련 당사자 위험, 점유권에 대한 소송에서의 변동, 이자율 상승 및 기타 부동산 자본시장의 영향 등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의 상승은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부동산투자회사 주식들에 투자한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가 직간접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규제와 정치적 위험	전세계에 걸쳐 분산투자 되므로 해당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의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규정 및 제한은 투자신탁이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금액 및 유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또한 시장가격, 유동성, 증권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이 투자신탁은 법규정 테두리 안에서 헷지, 대안투자로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금리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해외 부동산 펀드 혹은 주식 자산은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 자산가치 하락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 혹은 주식 자산은 참여자가 한정된 시장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파산이나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 타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 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위험	Goldman Sachs는 그 계열사 및 직원을 포함, 세계적인 풀 서비스 투자 은행, 브로커-딜러, 자산운용 및 금융 서비스 조직이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참여자입니다. 그 결과, Goldman Sachs는 여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가 사업으로 인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험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수시로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 위험배분에 따라 투자신탁의 다양한 투자자산 및 전략간 투자신탁의 자산을 배분하고자 하며, 수시로 운용사 임의 재량에 따라 이러한 배분을 재조정합니다.
목표 가격 변동성에 관한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목표 가격변동수준을 매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가격변동 수준이 연평균 목표 가격변동수준에 밀접한 범위 이내에 있지 않은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펀드가 이 목표를 준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익권 유동성 제한 환매 위험	투자신탁의 투자자산은 환매 제한에 따라, 수익자는 일정기간 동안 환매가 제한됨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의 경제적인 부담에 대비해야 합니다.
투자 및 거래 위험	투자신탁의 투자는 투자전액의 손실 위험을 포함하여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투자신탁에 의한 모든 투자는 자본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신탁이 모든 자본을 적절한 투자기회에 알맞게 배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분산 위험 및 집중투자위험	투자신탁은 특정 시점에 투자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전반적 포트폴리오 구성의 변화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한 결과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제한된 수의 발행인, 투자대상, 특정국가, 산업 및 시장에 상당한 포지션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가치가 하락하는 단일 발행인 또는 특정 유형의 투자자산에 상대적으로 큰 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고 부정적 시장 반응 없이 투자자산을 유동화 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투자자산이 시장상황 또는 환경의 변화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손실은 훨씬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위험	발행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상이한 회계, 감사 및 재무보고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거래량, 가격변동률 및 발행회사의 유동성은 정부 감독 및 증권거래, 증권 딜러 및 증권회사들에 대한 규제가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법은 투자신탁이 동 국가에 소재하는 특정 발행회사의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장은 청산 및 결제 절차도 서로 다릅니다. 결제 지연으로 일정 기간 투자신탁 자산의 일부가 투자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성과가 없게 되거나 또는 투자신탁이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제 문제로 인해 투자신탁증권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투자신탁증권의 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에 손실을 가져오거나, 또는 투자신탁이 증권 매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한 상대방에 대해 채무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신탁이 사용하는 투자전략 변동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수시로 운용사 임의 재량에 의해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다양한 투자전략을 이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의 제한된 유동성 위험	투자신탁은 자산의 일부를 유동성이 낮은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은 쉽게 처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경우 특정한 시기 동안 계약, 법률 또는 규제당국에 의해 처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관련펀드 투자에 대한 위험	투자신탁은 여러 개의 동일전략을 구사하는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거래의 구조, 법률 요건(ERISA가 부과한 제한 포함), 사용가능한 현금 및 조세나 기타 고려사항으로 인해 투자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 금리, 마진 위험	투자신탁은 투자프로세스에 의해 상당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의 가격변동성을 증가시킵니다. 신용에 의한 증권거래는 선물 거래와 달리 이자수수료를 발생시키며, 거래활동에 따라서는 이러한 수수료가 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Corporate Action 관련 위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의 발행회사는 수시로 그 증권과 관련하여 Corporate Action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형 유가증권과 관련한 Corporate Action은 특정 가격에 신규 주식의 매입을 제안하는 것이나 기존 주식을 매수하는 것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정 Corporate Action은 자발적인 것이며, 이는 투자신탁이 적시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Corporate Action에 참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정 Corporate Action에 참가하는 것은 본건 모투자신탁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보관회사로부터 자발적 Corporate Action에 대한 충분한 사전 통지를 수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이 그러한 Corporate Action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취득한 정보들 중에는 유용하지 않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량권을 선의로 행사할 것입니다. 투자신탁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자발적 Corporate Action의 충분한 사전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신탁은 적시에 그러한 Corporate Action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Corporate Action에의 참가 또는 불참가는 투자신탁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콜 옵션 위험	콜 옵션의 매매와 관련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커버되는 (즉 매도인이 기초자산인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콜옵션의 매도인(발행인)은,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수령한 프리미엄을 공제한 기초자산 매입가격 이하로 하락할 위험을 부담하며, 기초자산의 가격이 옵션 행사가격 이상으로 상승할 때 기초자산에서 수익을 얻을 기회를 포기합니다. 커버되지 않는 콜옵션의 매도인은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옵션 행사가격 이상으로 이론적으로는 무제한 상승할 위험을 부담합니다.
풋 옵션 위험	풋 옵션의 매매와 관련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커버되는 (즉 발행인이 기초자산인 유가증권에 대해 매도포지션을 취하는) 풋옵션의 매도인(발행인)은,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수령한 프리미엄을 더한 (매도포지션을 취할 때의) 기초자산 매도가격 이상으로 상승할 위험을 부담하며, 기초자산의 가격이 옵션 행사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기초자산에서 수익을 얻을 포기합니다. 커버되지 않는 풋옵션의 매도인은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옵션 행사가격 이하로 이론적으로는 무제한 하락할 위험을 부담합니다.
높은 변동성을 가진 시장 위험	투자신탁의 자산이 투자될 수 있는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은 이자율, 수급관계변경, 거래, 회계, 통화 및 환율 통제 프로그램, 정부 방침 및 국내 및 국제 정치 및 경제적 사건 및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선물 위험	투자신탁은 투자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선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물포지션은 일부 상품거래소가 '일별 가격변동한도' 또는 '일별한도'로 언급되는 규정에 의하여 하루동안의 선물계약가격의 가격변동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비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선도계약 위험	투자신탁은 장외에서 거래되며 일반적으로 정량화되지 않는 선도계약 및 그에 대한 옵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선도계약에 대한 일별 가격변동제한은 없습니다.
스왑계약 위험	투자신탁은 스왑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스왑은 다양한 형태의 위험과 관련이 있으며, 여기에는 시장위험, 유동성 위험, 구조화 위험, 조세위험 및 거래상대방의 재무건전성과 신용도에 관한 위험을 포함한 거래상대방 불이행 위험을 포함합니다.
파생상품 일반위험	투자신탁은 투자프로세스에서 파생상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소한 그 성과의 일부가 기초자산의 성과, 지수 또는 이자율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입니다. 투자신탁이 파생상품을 사용하면 직접 유가증권 또는 더욱 전통적인 투자상품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위험과는 다르면서 훨씬 클 수도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파생상품과 투자신탁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특징에 좌우됩니다. 또한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는 수익자들에게 추가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위험은 (i) 해당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및/또는 (ii)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의 잠재적인 비유동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이 헷지 목적으로 활용되는 범위 내에서, 헷지 파생상품의 가치와 그것이 헷지하는 유가증권 또는 포지션의 가치가 충분히 서로 연관되지 않는 경우 투자신탁에 대한 손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및 기타 채권과 관련한 파생상품 위험	고위험 고수익 채권 보유와 관련한 신용위험에 추가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고수익 및 기타 채권과 관련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신탁은 통상적으로 채권 발행인이 아닌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과만 계약관계를 가집니다. 투자신탁은 일반적으로 발행인이 파생상품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직접적으로 강제할 권리가 없으며, 발행인과 상계할 권리, 채무에 대하여 의결권을 지닐 권리도 없습니다.
ISDA 마스터계약 관련 위험	투자신탁은 ISDA 마스터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형태의 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ISDA 마스터계약은 해당 계약 당사자들 간의 계약관계(각 권리, 채무 및 의무를 포함함)를 규율하는 주요 규정을 정하고 있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계약입니다. 투자신탁을 대신하여 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할 때, 투자신탁을 대신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을 대신하여 ISDA 마스터계약을 체결하는 각 거래상대방에게 특정 진술 및 확약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진술 및 확약은, 투자신탁의 설립 기한, 투자신탁의 완전한 자격 및 권한, 투자신탁의 충분한 동의 획득 및 관련 법률 준수, 관련 ISDA 마스터계약, 관련 계약 및 거래에 본건 모투자신탁이 구속된다는 속성 등에 대한 투자신탁의 그에 대한 진술 및 확약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진술의 위반이 있는 경우, 기타 잠재적인 결과를 추가하여, 각 관련 거래상대방은 투자신탁과 체결한 ISDA 마스터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기타 협의 중인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머징 마켓 정부의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비미국 정부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신탁의 투자가 주로 선진국 정부에게 이루어지지만,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사 임의 재량으로 투자신탁 자본의 일부를 신흥시장국 정부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헤지 거래 위험	투자신탁은 헤지기법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헤지기법은 선물계약, 장내 및 장외 유가증권 풋옵션 및 콜옵션, 금융지수, 선물환계약 및 여러 금리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거래 등 여러가지 파생거래(통칭, “헤지상품”)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신탁 자산총액과 대비하여 오버헤지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헤지대상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기업/제한된 운영 경험 위험	수시로 투자신탁 자산의 중요한 부분이 소기업이나 최근 설립된 회사의 유가증권에 투자될 수 있으며, 반대로 투자신탁은 이러한 유가증권에 대한 중요한 매도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은 일반적으로 투자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대기업 보다 투자자가 적습니다. 그 결과, 소기업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기 쉽고 수익 면에서 평가절하 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의존도;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운용에 참여하지 않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투자프로세스에 의해 운용합니다. 투자신탁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투자신탁의 투자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이를 이행할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됩니다. 특히 투자신탁은 운용업무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따라 본 투자신탁의 성과가 좌우됩니다.
투자대상위험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의 핵심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글로벌 부동산 펀드 혹은 증권에 대한 운용역량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계열펀드 즉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용사이거나 자문사로 있으면서 보수를 지급받는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동 회사가 투자하는 다른 비계열펀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열펀드로부터 받는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신탁에게 반드시 리베이트로 지급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투자운용과정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정량적 투자과정을 사용하며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모델과 투자전략을 사용합니다. 회사 투자활동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델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됩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위험; 투자자에 관한 정보 공개	투자신탁에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조세 및 규제당국의 변경이 투자신탁의 기간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계열사, 또는 기타 투자신탁이나 집합투자업자의 서비스제공회사나 대행회사는 투자신탁이 투자하거나 공개당사자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거나 관할권을 주장하는 일부 국가의 규제당국에게 투자신탁 지분의 특정 비율 이상을 실제로 소유한 수익자의 이름을 포함 투자신탁과 수익자에 관한 정보 공개를 수시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대금 수령 전 거래	적용 법률상 허용되는 정도까지, 투자신탁은 운용사 임의 재량으로 해당 수익권에 대한 필수 청약대금 수령 전에 투자자들에게 수익권을 조건부로 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정에 근거하여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청약대금의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의 결과 발생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	투자신탁은 공매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소유될 수 있거나 소유될 수 없는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매입인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동일한 유가증권을 차입하는 것과 관련되며, 그 후에 차입한 유가증권을 돌려 갚을 의무를 지닙니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유가증권 하락시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기초유가증권의 가격은 이론적으로 무한하게 증가할 수 있고 매도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 이러한 유가증권 매입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는 이론적으로 무한한 손실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화 거래	투자신탁에 다양한 통화간 전환과 관련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빈번한 거래 및 매출액	GSAM은 집합투자업자로서 통화, 유가증권 및 기타 투자자산에 대하여 빈번한 거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빈번한 거래는 일반적으로 높은 거래 비용을 초래하며, 이는 투자신탁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발행인 위험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의 발행인은 종종 높은 수준의 사업 및 경영위험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회사는 개발초기단계에 있거나, 검증된 영업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영업 손실이 있거나, 영업 성과에 큰 변동이 있거나, 상당한 쇠퇴위험을 가진 상품과 연관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영업지원, 확장을 위한 재무조달 및 경쟁적 우위 유지를 위해 상당한 추가자본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달리 취약한 경영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량 환매 위험	투자신탁은, 집중된 기간 동안 수익자가 요청한 대량 환매로 인해, 환매 자금 조달을 위해, 그리고 작은 자산 기반을 반영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것보다 더 빨리 특정 투자자산을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투자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고 환매된 수익증권 및 잔존한 발행 수익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운영경험; 계열펀드의 과거 성과	투자신탁은 장래 투자자들이 투자신탁의 성과 가능성을 평가할 때 참고하는 운영경험을 제한적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투자 프로세스와 유사하거나 다른 투자프로세스가 있는, 다른 투자 펀드나 Goldman Sachs가 운영하는 펀드의 성과는 투자신탁이 달성할 수 있는 성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수익권 모집에 적용되는 특별 고려사항	투자신탁은 자신이 결정한 바와 같이 약관에 따라 추가 청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수익권의 매입은 매입 이전에 투자신탁의 투자 포트폴리오 내 기존 수익자들의 간접적인 이익을 희석시키며, 만약 향후 투자신탁의 투자가 기존 투자신탁 투자보다 성과를 못 내는 경우 투자신탁의 기존 수익자들의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인	투자신탁은 자문을 받기 위하여 법률자문인(“자문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자문인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계열사의 법률자문인으로 행위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계열회사의 진술과 관련하여, 자문인은 수익자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은 수익자를 대표하기 위하여 어떠한 독립 자문인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단기금융상품 및 기타 유동상품	투자신탁은 방어목적 또는 그 외의 목적으로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정수익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및 단기금융 펀드에 투자할 수 있거나, 집합투자업자가 정황상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역환매조건부 매매계약	투자신탁은 역환매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역환매조건부계약은 어느 당사자가 은행 또는 유가증권 딜러에게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동시에 매도 당사자가 특정 일자에 확정 가격으로 (금리를 반영하여) 동 유가증권을 재매입 하는 약정을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일부 목적상 차입의 형태로 간주됩니다.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 및 증서	주식증권의 가치는 다양한 요소(발행인, 산업 등)로 인하여 변경되며 특정한 경우에는 상당한 손실위험이 있습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우선주, 전환증권 및 신주인수권부증권	투자신탁은 우선주, 전환증권 및 신주인수권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 전환증권 및 신주인수권부증권의 가치는 주식시장의 변동 및 특히 기초가 되는 보통주의 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신탁은 전환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행사가격으로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통상적인 장기 채무증서인 회사채 또는 우선주가 이에 포함됩니다. 모든 채무증권과 마찬가지로 전환주식의 시가는 이자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반대로 이자율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환주식은 일반적으로 건전성이 유사한 비전환주식보다 낮은 이자 또는 배당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전환주식의 기준이 되는 보통주식 시가가 전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환주식의 가격이 기초 보통주식의 가격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보통주식의 시가가 감소하면 전화주식은 수익률에 기하여 더 많이 거래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기초가 되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환주식은 일반적으로 발행회사의 자본구조에서 보통주식보다 우선순위를 가지며, 결과적으로 발행회사의 보통주식보다 건전성이 더 높고 그보다 더 낮은 위험을 갖습니다. 단, 그렇게 위험이 감소하는 정도는 대부분 전환주식가 고정 수입 증권으로서 판매되는 정도에 따릅니다. 전환주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집합투자업자는 기초가 되는 보통주식의 수익성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둘 것입니다.
채권	투자신탁은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발행인이 채무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예, 신용위험)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자율 변동, 발행인의 신용도에 대한 시장의 이해, 일반적인 시장유동성(예, 시장위험)과 같은 요소로 인한 가격변동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채권	투자신탁이 취득할 수 있는 (통상 “정크 본드”로 알려진) 고수익 채권 및 기타 채권은 선순위 채권자들에 비하여 후순위입니다. 고수익 채권의 낮은 등급은 발행인의 재무조건이나 일반적인 경제, 금융, 경쟁상, 규제 및 기타 조건의 불리한 변동이 원리금을 지급할 발행인의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기타 채권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사 임의 재량으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고 회사 또는, 국가나 정부와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기타 법인의 투자적격등급 채권 또는 기타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및 후순위 사채; 담보 모기지 채무의 투자적격등급 tranches, 담보 채권 및 담보 대출 채무, 우선주, 사채 및 은행 채권.
유가증권 매입 및 금융부실회사의 기타 채무	투자신탁은 파산이나 기타 구조조정 및 청산절차와 관련한 회사를 포함하여 중요한 재무상 또는 사업상 침체를 겪고 있는 회사들의 유가증권 및 다른 채무를 직간접적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매입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매입은 상당한 수준의 위험과 관련이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채권 참여	투자신탁은 참여자(“참여”)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는 해당 대출채권의 원금 일부 와 동 원금 일부에 대한 이자 전부를 수령할 권리를 나타냅니다.
브로커, 거래상대방 및 거래소의 불이행	투자신탁은 장내 또는 장외거래 여부를 불문하고 투자신탁이 거래하는 거래상대방 또는 브로커, 딜러 및 거래소의 신용위험에 노출됩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거래상대방 거래 관계 필요성	거래상대방이 마진, 담보, 신용장 또는 다른 신용 보강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장외시장 참여자들은 충분히 신용도가 높다고 믿는 거래상대방과만 거래를 체결합니다.
이행요건	장내거래상품과는 반대로, 선도, 현물 및 옵션 계약과 통화스왑은 트레이더에게 동등한 거래 및 반대 거래와 채무를 상쇄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선도, 현물 또는 옵션 계약 또는 스왑 체결시 투자신탁은 계약에 의거한 채무를 이행할 것이 요구될 수 있으며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스프레드 거래 위험	투자신탁이 스프레드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스프레드를 구성하는 포지션을 기초로 하는 통화의 가격은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하지 않을 위험 또는 스프레드 포지션이 유지될 기간동안 동일한 정도로 변동하지 않을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투자신탁은 스프레드 포지션의 한 구간 또는 양 구간에 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의결권 및 주식매매금지 관련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으로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적격 투자자산과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의결권이나 기타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투자신탁은 의결권 또는 기타 권리의 행사에 대한 지침을 설정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은 그 재량으로 이러한 의결권 또는 기타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적격 투자자산은 “주식매매금지(share blocking)”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의결권 기타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보관기관들이 자신이 보관중인 투자자산의 거래를 “동결”시킬 때 발생합니다. 주식매매금지는 일반적으로 관련 투자자산에 대해 개최가 예정되는 주주총회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산은 “동결”되는 동안에는 거래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비유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투자신탁(또는 그 대리인)은 “주식매매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적격 투자자산에 대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평가오류 조정에 대한 중요성 방침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 산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하여 중요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방침상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오류들이 있는 경우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중요성 방침이 적용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들의 경우에 수익자들은 순자산가치의 산정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수령하였을 경우와 다른 경제적 결과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치” 가격의 검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증권 또는 증서에 대한 가격을 결정할 수 없거나 외부공정가치산정 업무제공자들로부터 가격을 얻을 수 없는 경우 특정 증권 및 증서에 대한 “공정가치”가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익자는 본건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에 대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이런 공정가격을 이용하기 전에 이러한 가격에 대하여 “합리성(reasonableness)” 시험이나 기타 다른 시험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채의 인식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알지 못하는 부채(세금 관련 부채 포함)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확정적인 부채일 수도 있고, 잠재적인 부채일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파악하는 한 집합투자업자는 회계 처리 기준에 의거, 또는 관련 회계 처리 기준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그러한 부채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투자신탁은 (i) 그러한 부채의 인식이 회계 처리 기준상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ii) 집합투자업자가 그러한 부채를 유발하는 요인을 알 수 없기 때문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에, 또는 (iii) 그러한 부채를 유발할 수도 있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세금 관련 규정 포함)의 해석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또는 (iv) 집합투자업자가 그러한 부채와 관련하여 지불이 필요할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는 (v)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가 그와 같이 판단하였기 때문에 해당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채가 인식되기 이전에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그러한 부채가 인식되었을 경우에 비하여 높은 기준가격으로 투자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그러한 부채에 따른 지급을 하여야 하거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부채의 인식 또는 지급은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그와 같은 부채를 인식하거나 지불하는 시기에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그러한 부채가 발생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투자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식 부채 총액을 일반적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하여는 “별첨I”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환매금지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도, 투자대상 자산이 장외파생상품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중도매각에 따라 수익자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2)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 가능성에 따라 수익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환매대금은 환매청구 당시 예상되는 환매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라.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로 전세계 시장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증권 (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주식)등에 투자하며 국내 및 국외의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실물 또는 부동산관련증권에 50%이상 투자하는 부동산투자신탁으로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따라서 이를 잘 인식하는 투자자로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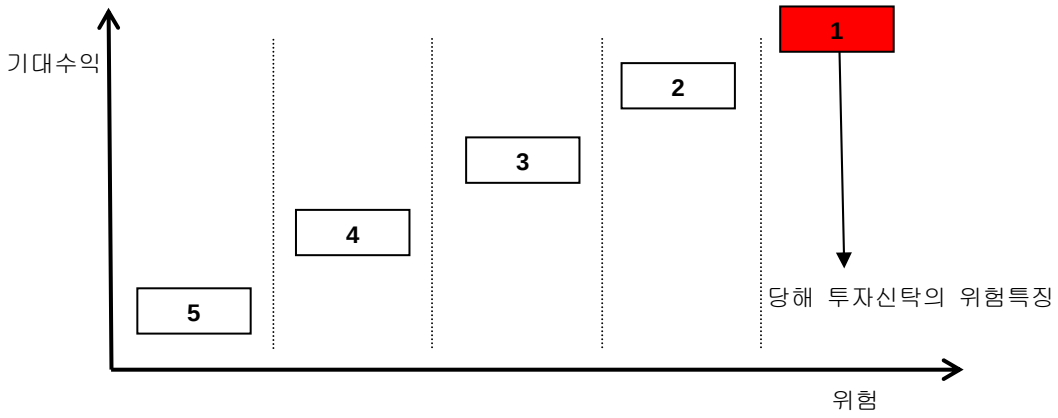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및 상세설명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상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이상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 - 부동산실물 또는 부동산관련증권에 50%이상 투자하는 부동산투자신탁
2등급	높은 위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하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하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 - 부동산실물 또는 부동산관련증권에 50%이하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
3등급	중간위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30%이하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30%이하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
4등급	낮은 위험	- 국공채 및 회사채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5%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 - 채권형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 MMF -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상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

* 상기 도표는 당사의 위험등급별 분류기준을 나타내기 위한 예시목적일 뿐이며 모든 투자상품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 방법

수익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영업일 영업시간 중에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업일의 17시까지 수령된 주문 및 자금은 해당 영업일에 처리되며, 영업일의 17시 경과 이후에 수령된 주문 및 자금은 다음 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판매회사에 따라서는, 수익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회사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익증권매수청구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매입에 필요한 요건, 매입 방법, 기타 매입 절차 등 수익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가 개별 판매회사와 확인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판매회사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직·간접적 손실 또는 결과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수익증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다만, 종류 C1, C2, C3, C4 수익증권은 각 종류의 가입 자격에 따라, 수익자의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 종류 A 수익증권 : 제한 없음
- 종류 C1 수익증권 : 제한 없음
- 종류 C2 수익증권의 수익자 : 종류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 종류 C3 수익증권의 수익자 : 종류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 종류 C4 수익증권의 수익자 : 종류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 종류 C5 수익증권의 수익자 : 종류 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 종류 I 수익증권 : 납입금액 10억 이상 투자자
- 종류 W 수익증권 : 증권회사의 일임형 Wrap,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매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판매회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등을 납입한 영업일(당일 포함)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한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1좌를 1원으로 하여 기준가격을 1,000원으로 함)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별첨 II 용어에 기재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로 합니다. 다만, 당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1,000원)으로 합니다. **수익자가 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당일 포함)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한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1좌를 1원으로 하여 기준가격을 1,000원으로 함)으로 합니다.

* 위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2010년 3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 2010년 3월 15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대해서는 변경전 기준가격이 적용됩니다(즉, 기준시간(17시) 이전에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위 기준시간(17시) 경과 후에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3) 매입관련 유의사항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들은 시장교란, 자금세탁 우려, 시차활용거래, 과도한 거래 또는 이 투자신탁의 청산 등과 같은 합리적인 사유 발생시, 언제라도 그 재량으로 투자자의 수익증권 매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들은 그들이 매입 신청을 받는 것이 이 투자신탁이나 수익자들의 이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재량으로 이러한 매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기간 (이하 명시됨)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수익증권 환매연기가 된 사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사실 등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동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달리, 법령에 따라 수익증권의 판매가 제한되는 경우, 투자자는 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판단에 따라 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신규 판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 판단에 따라 신규 판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판매 중단 또는 재개에 관하여 통지 또는 공고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당해 투자신탁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거나 중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각 영업일에 17시까지 수익증권 환매 주문을 수령합니다. 판매회사가 17시 경과 이후에 수익증권 환매요청을 수령한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 단락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물보유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장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합니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을 포함합니다)부터 제10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11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내외의 공휴일 등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환매대금 지급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그 지급이 가능하게 되는 즉시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사(위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합니다)는 위 단락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합니다)가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지급합니다. 다만, 당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수익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수익증권의 원활한 환매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54조 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합니다)는 본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른 수익증권환매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익증권환매청구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상기 (1)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합니다. 이하 아래에서 같습니다)(당일을 포함함)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토요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한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닌 날로써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별첨 II. 용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가)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전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그밖에 법 시행령 제257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그밖에 법 시행령 제257조 제3항에서 정한 사항

(라)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4) 환매 연기기간 동안 매수 및 환매신청의 처리 등

(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회사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나) 집합투자업자는 위 (가)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판매회사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환매연기 이후, 환매 연기 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 연기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익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환매 연기 기간 동안에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의 산정 중단에 관하여 공시하고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대한 매수 및 환매를 신청한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기준가격의 산정 중단이 해소되는 때에 매수 및 환매의 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위 (3) (가)항에 따른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함)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일부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 제7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다) 집합투자업자는 위 (4) (가)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라)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바) 집합투자업자는 위 제(가)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자 또는 그 수익자의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2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3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환매수수료

(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다만, 판매회사가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합니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별로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집합투자재산에 편입합니다.

(나)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합니다. 여기서 "이익금"이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과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시 적용된 기준가격의 차에 환매하는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환매하는 수익증권 좌수에 대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합산하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합니다.

1. 종류 C1, C2, C3, C4, C5 수익증권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주)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위 원칙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 전환

(1) 수익증권의 전환

집합투자업자는 종류 C1, C2, C3, C4의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입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 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종류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4. 종류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5 수익증권으로 전환

이와 같이 전환하는 경우, 각 종류별 보유기간 1년이 만료되는 시점("전환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투자신탁의 결산, 전환 대상 수익자의 추가매입, 환매신청, 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대상 좌수가 전환일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투자분의 확정, 추가매입 또는 환매신청 절차 등이 종료되어 전환대상 좌수가 확정되는 일자의 익영업일에 전환합니다.

이와 같이 전환되는 수익증권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 수익증권의 전환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집합투자업자는 아래 나. 항목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합니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법 제238조 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종류 간 보수 및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 영업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영업소 및 집합투자업자 (www.goldman-sachs.co.kr)・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기준가격 오류 수정

집합투자업자는 적용 법령 및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종류의 좌당 기준가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게시(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의 1천분의 1(또는 법령에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하여야 합니다.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합니다.

(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원
(다) 준법감시인
(라)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적용 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수익증권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 1)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판매회사가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함)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별로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신한아이타스 제공)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A	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 이하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0.0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C	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 일미만시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을 1 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 일미만시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C3	종류 C2 수익증권을 1 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 일미만시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C4	종류 C3 수익증권을 1 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 일미만시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C5	종류 C4 수익증권을 1 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 일미만시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I	납입금액이 10 억원 이상인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180 일 미만시 환매금액의 1.00% 이하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0.0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W	증권회사의 일임형 Wrap,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0.00%	환매시

주 1) 종류A만이 선취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종류C1, C2, C3, C4, C5의 경우 판매보수가 종류A보다 더 높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이익금" 이란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과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된 기준가격의 차에 환매하는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환매하는 수익증권 좌수에 대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합산하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합니다.

나. 이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합니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나누어 집니다.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합니다)은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보수계산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합니다.

(신한아이타스 제공)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A	제한 없음	집합투자업자보수	0.9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90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400	
		기타비용	0.0735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9735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9735	-
		증권 거래비용	0.7109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1	제한 없음	집합투자업자보수	0.90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50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400	
		기타비용	0.0738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2.5738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5738	-
		증권 거래비용	0.7103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을 1 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90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40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400	
		기타비용	0.0298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2.4298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4298	-
		증권 거래비용	0.1756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3	종류 C2 수익증권을 1 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90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30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400	
		기타비용	0.0258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2.3258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3258	-
		증권 거래비용	0.1615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4	종류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9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20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400	
		기타비용	0.0323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2.2323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2323	-
		증권 거래비용	0.1305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5	종류 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9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10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400	
		기타비용	0.026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2.1260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1260	-
		증권 거래비용	0.2724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I	납입금액이 10 억원 이상인 투자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9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70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400	
		기타비용	0.073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7730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7730	-
		증권 거래비용	0.7159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W	증권회사의 일임형 Wrap,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집합투자업자보수	0.9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00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400	
		기타비용	0.073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0730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730	-
		증권 거래비용	0.7159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09.05.30 ~ 2010.05.29] 다만, 종류 W 는 신규 설정된 종류로서 거래 실적이 없으므로 유사한 유형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09.05.30 ~ 2010.05.29] 다만, 종류 W는 신규 설정된 종류로서 거래 실적이 없으므로 유사한 유형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한아이타스 제공)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1,000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글로벌리츠 종류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00	715	1,154	2,37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300	715	1,154	2,373
글로벌리츠 종류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64	810	1,383	2,93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64	810	1,383	2,937
글로벌리츠 종류C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49	766	1,309	2,79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49	766	1,309	2,791
글로벌리츠 종류C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8	734	1,256	2,68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38	734	1,256	2,685
글로벌리츠 종류C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9	705	1,208	2,58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29	705	1,208	2,589
글로벌리츠 종류C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8	672	1,153	2,47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18	672	1,153	2,478
글로벌리츠 종류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2	563	968	2,10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82	563	968	2,101
글로벌리츠 종류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0	343	595	1,31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0	343	595	1,314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C1 와 종류 A의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7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종류유형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연간 0.00%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위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및 경비를 공제한 후에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집합투자업자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에 관한 사항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i)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ii)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날에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세가 있을 수 있으나, 외국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수익자의 환매 시점, 투자신탁에 대한 결산일 기준의 손익 상황 등에 비추어 환급액이 존재하지 않거나, 환급에 따른 혜택을 개별 수익자가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 환급비율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 소득금액)
단, 환급비율이 1보다 크면 1, 환급비율 0보다 작으면 0을 적용함.

당해 투자신탁의 환매 또는 분배와 관련하여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원천징수세 외에 이 투자신탁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으로부터 이익을 지급받는 날 또는 이익금이 재투자되는 날에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투자신탁으로부터 수익자에게로의 환매대금 지급시 또는 이익분배시(해당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 원천징수세 부과대상인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및 벤처기업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의 경우 원천징수과세대상인 배당소득으로부터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을 수익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는 이 또한 수익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을 한도로 투자신탁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4%

수익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해당 수익자의 다른 소득(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해당 세율(경상 소득의 35% 세율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최고 한계 세율은 38.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법인의 다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경상소득세 22% 세율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세율은 24.2%)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 또는 환급받게 됩니다.

※ 상기에 기재한 요약은 한국거주자인 투자자에게 한국에서 현재 적용되는 법률 및 관행에 기초한 것이며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또한, 각 수익자의 과세는 각자의 조세지위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익자들은 수익증권의 매입, 매수, 보유, 양도, 환매 및 기타 처분의 결과 조세부과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자신의 조세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 특히 한국 이외의 국가의 납세의무자인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매입, 매수, 보유, 양도, 환매 및 기타 처분으로 인한 당해 국가에서의 조세 부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조세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 당해 투자신탁이나 집합투자업자 모두 그 수익자들에게 특정 국가의 조세 행정이나 조세부담 요건에 맞게 짜여진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6기(2010.05.30 - 2010.11.29)	회계기간미경과	해당없음
제5기(2009.05.30 - 2010.05.29)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4기(2008.05.30 - 2009.05.29)	삼일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항 목	제6기	제5기	제4기
	(2010.11.29)	(2010.05.29)	(2009.05.29)
운용자산	144,034,260,990	170,717,135,154	189,470,672,056
증권	137,905,984,380	159,712,155,271	151,163,951,899
파생상품	1,561,978,957	8,899,312,708	34,356,970,933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4,566,297,653	2,105,667,175	3,949,749,224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554,182,229	9,146,750,666	2,205,089,483
자산총계	144,588,443,219	179,863,885,820	191,675,761,539
운용부채	3,786,508,026	12,393,908,720	31,429,448,764
기타부채	1,311,200,746	9,817,483,301	4,959,562,799
부채총계	5,097,708,772	22,211,392,021	36,389,011,563
원본	290,999,018,201	341,823,936,154	408,195,179,366
이익잉여금	-151,508,283,754	-184,171,442,355	-252,908,429,390
자본총계	139,490,734,447	157,652,493,799	155,286,749,976
부채와자본총계	144,588,443,219	179,863,885,820	191,675,761,539

(단위 : 원,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항 목	제6기	제5기	제4기
	(2010.05.30 - 2010.11.29)	(2009.05.30 - 2010.05.29)	(2008.05.30 - 2009.05.29)
운용수익	7,580,335,804	36,397,710,926	-137,432,537,297
이자수익	8,378,986	20,159,753	411,371,564
배당수익	3,577,158,274	8,864,843,879	12,752,223,475
매매/평가차익(손)	3,994,798,544	27,512,707,294	-150,596,132,336
기타수익	260,781,308	755,211,183	318,579,099
운용비용	1,494,454,887	3,496,654,816	4,156,508,814
관련회사 보수	1,494,454,887	3,496,654,816	4,156,508,814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314,878,838	830,867,999	1,588,340,632
당기순이익	6,031,783,387	32,825,399,294	-142,858,807,644
매매회전율	227.61	396.67	294.53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 원)

과 목	제5기(2010.05.29)		제4기(2009.05.29)		제3기(2008.05.29)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2,105,667,175		3,949,749,224		31,307,138,064
1. 현금및현금성자산	879,475,645		896,982,131		4,112,028,470	
2. 예치금	1,226,191,530		3,052,767,093		27,195,109,594	
대출채권		0		0		1,500,000,000
1. 콜론	0		0		1,500,000,000	
유가증권		159,712,155,271		151,163,951,899		318,578,162,994
1. 지분증권	29,008,997,668		35,495,779,277		55,331,664,659	
2. 수익증권	130,703,157,603		115,668,172,622		263,246,498,335	
파생상품		8,899,312,708		34,356,970,933		2,534,512,924
1. 파생상품	8,899,312,708		34,356,970,933		2,534,512,924	
기 타 자 산		9,146,750,666		2,205,089,483		12,718,582,188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7,755,709,168		1,754,379,177		12,374,566,404	
2. 미수이자	810,435		1,401,740		15,818,999	
3. 미수배당금	197,455,683		449,308,566		328,196,785	
4. 기타미수금	488,712,700				0	
5. 선납원천세	704,062,680		-			
자 산 총 계		179,863,885,820		191,675,761,539		366,638,396,170

부 채						
운 용 부 채		12,393,908,720		31,429,448,764		21,943,037,848
1. 통화선도	12,393,908,720		31,429,448,764		21,943,037,848	
기 타 부 채		9,817,483,301		4,959,562,799		6,991,445,772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7,902,545,974		3,870,391,128		1,067,465,479	
2. 해지미지급금	563,563,994		365,469,046		4,091,340,348	
3. 수수료미지급금	840,724,551		707,413,212		1,818,210,316	
4. 기타미지급금	510,648,782		16,289,413		14,429,629	
부 채 총 계		22,211,392,021		36,389,011,563		28,934,483,620
자 본						
1. 원 본	341,823,936,154		408,195,179,366		479,841,814,158	
2. 결손금	-184,171,442,355		-252,908,429,390		-142,137,901,608	
(발행좌수:						
당기: 341,823,936,154좌						
전기: 408,195,179,366좌)						
(1,000좌당 기준가격:						
당기: ClassA 463.04 원						
당기: ClassI 466.54 원						
당기: ClassC 448.60 원						
전기: ClassA 381.53 원						
전기: ClassI 383.65 원						
전기: ClassC 373.07 원						
자 본 총 계		157,652,493,799		155,286,749,976		337,703,912,55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79,863,885,820		191,675,761,539		366,638,396,170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제5기(2009.05.30-2010.05.29)		제4기(2008.05.30-2009.05.29)		제3기(2007.05.30-2008.05.29)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9,640,214,815		13,482,174,138		47,073,003,330
1. 이자수익	20,159,753		411,371,564		3,035,019,089	
2. 배당금수익	8,864,843,879		12,752,223,475		33,027,005,865	
3. 수수료수익	7,510,328		6,691,286		101,031,660	
4. 기타수익	747,700,855		311,887,813		10,909,946,716	
2. 매매이익과 평가이익		4,224,719,325,875		1,567,956,353,449		344,442,407,837
1. 지분증권매매이익	10,568,564,754		3,507,885,673		40,959,695,827	
2. 집합투자증권매매이익	16,000,295,737		2,156,749,336		26,609,376,408	
3. 외환차익	4,097,523,325,147		1,412,077,003,087		209,534,393,753	
4. 지분증권평가이익	4,203,118,015		12,800,099,084		318,074,571	
5. 집합투자증권평가이익	47,571,361,974		61,704,462,062		2,648,585,867	
6. 파생상품평가이익	8,899,312,708		34,356,970,933		2,534,512,924	
7. 외화환산이익	39,953,347,540		41,353,183,274		61,837,768,487	
3. 매매손실과 평가손실		4,197,206,618,581		1,718,552,485,785		603,680,259,471
1. 지분증권매매손실	9,204,249,541		30,409,077,121		77,392,831,619	
2. 집합투자증권매매손실	24,947,427,324		136,842,712,484		205,387,226,719	
3. 외환차손	4,081,103,128,604		1,405,446,457,925		230,229,935,410	
4. 지분증권평가손실	7,700,224,597		3,855,168,350		7,764,888,559	
5. 집합투자증권평가손실	7,542,834,195		46,023,725,176		60,604,557,946	
6. 파생상품평가손실	12,393,908,720		31,429,448,764		21,943,037,848	
7. 외화환산손실	54,314,845,600		64,545,895,965		357,781,370	

운 용 비 용		4,327,522,815		5,744,849,446		24,471,653,880
1. 운용수수료	1,552,402,012		1,843,198,552		7,207,673,562	
2. 판매수수료	1,771,764,084		2,108,510,796		8,121,536,415	
3. 수탁수수료	103,493,340		122,879,790		480,511,478	
4. 사무수탁수수료	68,995,380		81,919,676		320,340,812	
5. 기타비용	830,867,999		1,588,340,632		8,341,591,613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32,825,399,294		-142,858,807,644		-236,636,502,184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85.29		-332.07		-266.87

(주 1) 나. 대차대조표와 다. 손익계산서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하여 요약 재무정보에 제공한 반기실적에 대한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를 받은 후 별도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신한아이타스 제공)

글로벌리츠재간접(모)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0.05.30 - 2010.11.29	3,222	1,585	28	14	534	272	2,716	1,402
2009.05.30 - 2010.05.29	3,922	1,560	267	126	967	464	3,222	1,585
2008.05.30 - 2009.05.29	4,717	3,395	230	116	1,025	565	3,922	1,560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종류별 설정 및 환매현황

(신한아이타스 제공)

종류 A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0.05.30 - 2010.11.29	2,709	1,255	12	6	431	207	2,290	1,102
2009.05.30 - 2010.05.29	3,260	1,244	184	83	735	337	2,709	1,255
2008.05.30 - 2009.05.29	3,861	2,721	101	49	702	379	3,260	1,244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종류 C1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0.05.30 - 2010.11.29	487	218	19	9	108	50	398	185
2009.05.30 - 2010.05.29	591	220	89	39	192	86	487	218
2008.05.30 - 2009.05.29	697	485	138	67	244	130	591	220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종류 I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0.05.30 - 2010.11.29	222	103	0	0	0	0	222	108
2009.05.30 - 2010.05.29	231	89	0	0	9	4	222	103
2008.05.30 - 2009.05.29	241	171	0	0	10	3	231	89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주2) 종류 C2, C3, C4, C5는 미설정된 종류로서 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한아이타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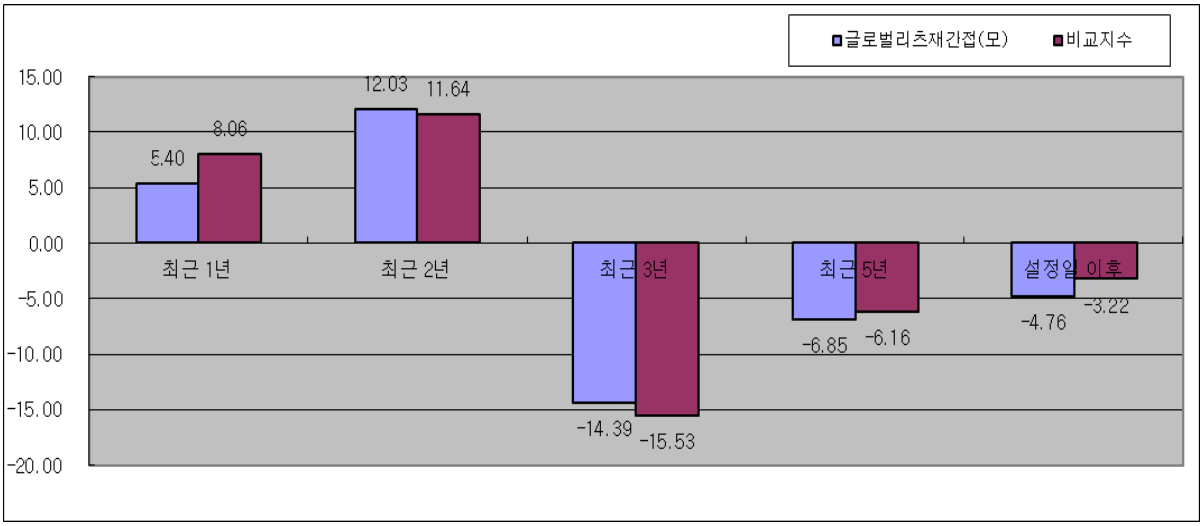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0.01.01 ~10.12.31	09.01.01 ~10.12.31	08.01.01 ~10.12.31	06.01.01 ~10.12.31	05.05.30 ~10.12.31
글로벌리츠재간접(모)	5.40	12.03	-14.39	-6.85	-4.76
비교지수	8.06	11.64	-15.53	-6.16	-3.22
종류 A	3.39	9.91	-16.06	-8.65	-6.58
비교지수	8.06	11.64	-15.53	-6.16	-3.22
종류 C1	2.64	8.98	-16.82		-15.68
비교지수	8.06	11.64	-15.53		-13.08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0.01.01 ~10.12.31	09.01.01 ~10.12.31	08.01.01 ~10.12.31	06.01.01 ~10.12.31	05.05.30 ~10.12.31
종류 I	3.60	10.13	-15.87	-8.45	-7.21
비교지수	8.06	11.64	-15.53	-6.16	-4.78
종류 C2					
비교지수					
종류 C3					
비교지수					
종류 C4					
비교지수					
종류 C5					
비교지수					

(주 1) 비교지수 : (1 * ([DEVELOPED]*0.5+[AUS]*0.5))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종류 C2, C3, C4, C5 는 판매보수인하에 따른 CDSC 일괄전환된 종류로서 전환일 이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주 6)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관련 주식 등)에 대한 운용업무는 Macquarie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가 위탁받아 영위하고 있었으나,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업무위탁계약에 의거하여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 Goldman Sachs (Singapore) Pte.,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Co., Ltd., 및 Goldman Sachs (Asia) L.L.C.로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변경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률 현황을 비교하였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신한아이타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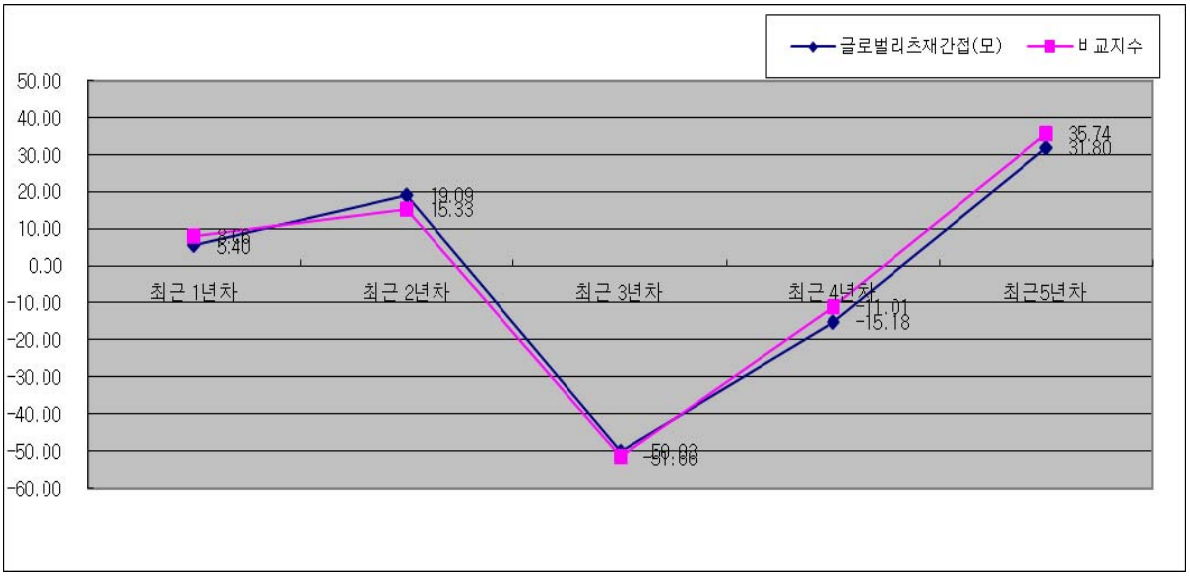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10.01.01 ~10.12.31	09.01.01 ~09.12.31	08.01.01 ~08.12.31	07.01.01 ~07.12.31	06.01.01 ~06.12.31
글로벌리츠재간접(모)	5.40	19.09	-50.03	-15.18	31.80
비교지수	8.06	15.33	-51.66	-11.01	35.74
종류 A	3.39	16.84	-51.05	-16.84	29.38
비교지수	8.06	15.33	-51.66	-11.01	35.74
종류 C1	2.64	15.71	-51.57	-17.60	
비교지수	8.06	15.33	-51.66	-11.01	
종류 I	3.60	17.08	-50.94	-16.65	29.64
비교지수	8.06	15.33	-51.66	-11.01	35.74
종류 C2					
비교지수					
종류 C3					
비교지수					
종류 C4					
비교지수					
종류 C5					
비교지수					

(주 1) 비교지수 : (1 * ([DEVELOPED]*0.5+[AUS]*0.5))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8)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관련 주식 등)에 대한 운용업무는 Macquarie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가 위탁받아 영위하고 있었으나,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업무위탁계약에 의거하여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 Goldman Sachs (Singapore) Pte.,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Co., Ltd., 및 Goldman Sachs (Asia) L.L.C.로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변경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률 현황을 비교하였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신한아이타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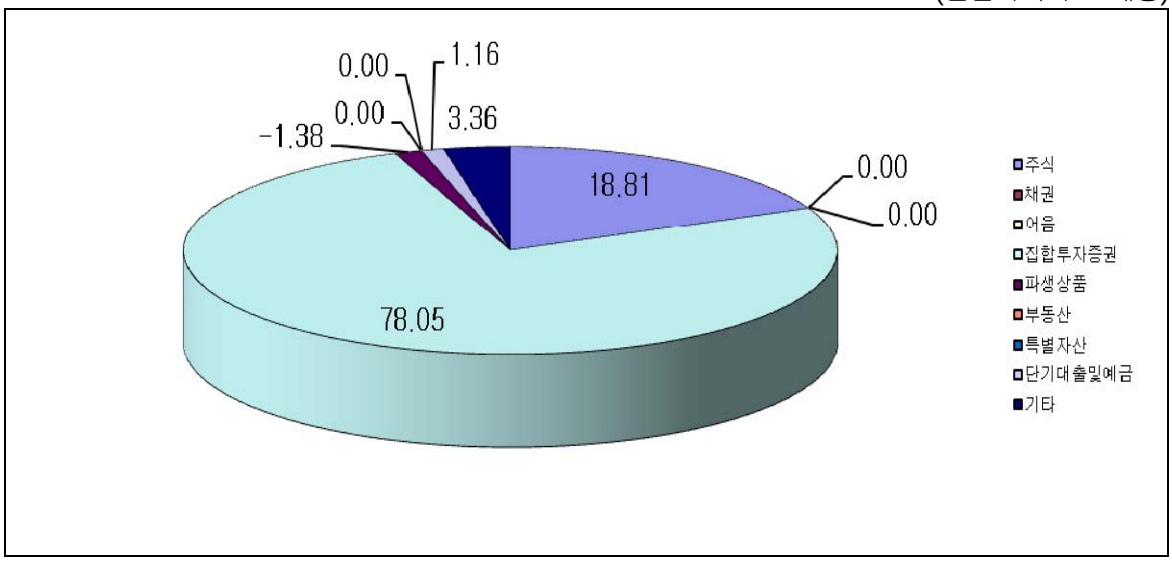

[2011.02.28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0	0	0	0	0	0	0	0	8	46	5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4.43)	(85.57)	(4.00)
AUD	0	0		667	0	0		0		5	0	672
	(0.00)	(0.00)	(0.00)	(99.23)	(0.00)	(0.00)	(0.00)	(0.00)	(0.00)	(0.77)	(0.00)	(49.00)
CAD	10	0		29	0	0		0		0	0	40
	(26.22)	(0.00)	(0.00)	(72.91)	(0.00)	(0.00)	(0.00)	(0.00)	(0.00)	(0.87)	(0.00)	(3.00)
CHF	5	0		0	0	0		0		0	0	5
	(99.2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74)	(0.00)	(0.00)
EUR	11	0		42	0	0		0		0	0	53
	(21.37)	(0.00)	(0.00)	(78.55)	(0.00)	(0.01)	(0.00)	(0.00)	(0.00)	(0.07)	(0.00)	(4.00)
GBP	4	0		34	0	0		0		0	0	37
	(9.54)	(0.00)	(0.00)	(90.36)	(0.00)	(0.00)	(0.00)	(0.00)	(0.00)	(0.10)	(0.00)	(3.00)
HKD	105	0		0	0	0		0		0	0	105
	(99.92)	(0.00)	(0.00)	(0.00)	(0.00)	(0.05)	(0.00)	(0.00)	(0.00)	(0.03)	(0.00)	(8.00)
JPY	36	0		20	0	0		0		0	0	56
	(64.54)	(0.00)	(0.00)	(35.40)	(0.00)	(0.00)	(0.00)	(0.00)	(0.00)	(0.06)	(0.00)	(4.00)
SGD	54	0		0	0	0		0		0	0	54
	(99.9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7)	(0.00)	(4.00)
USD	33	0		280	0	-19		0		2	0	296
	(11.05)	(0.00)	(0.00)	(94.53)	(0.00)	-(6.41)	(0.00)	(0.00)	(0.00)	(0.83)	(0.00)	(22.00)
합계	258	0	0	1,071	0	-19	0	0	0	16	46	1,372
	(18.81)	(0.00)	(0.00)	(78.05)	(0.00)	-(1.38)	(0.00)	(0.00)	(0.00)	(1.16)	(3.36)	(100.00)

(주 1) 괄호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1) 국내 주식, 채권 구성 현황

- 해당 없음

(2) 해외 채권 구성 현황

- 해당 없음

(3) 해외 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신한아이타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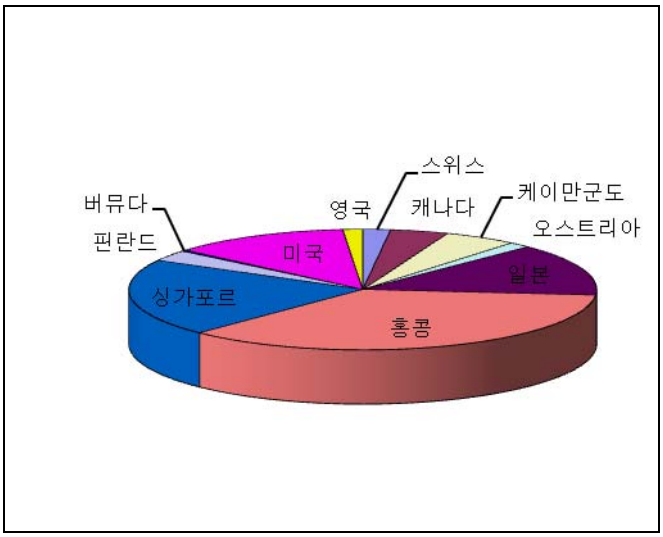

[2011.02.28 현재 / 단위 : 억원,%]

거래국	해외주식	
	금액	비중
스위스	5	1.90%
캐나다	10	4.02%
케이만군도	13	5.06%
오스트리아	4	1.49%
일본	36	14.04%
홍콩	92	35.74%
싱가포르	54	20.78%
핀란드	8	2.93%
버뮤다	1	0.37%
미국	32	12.31%
영국	4	1.37%

(4) 해외 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신한아이타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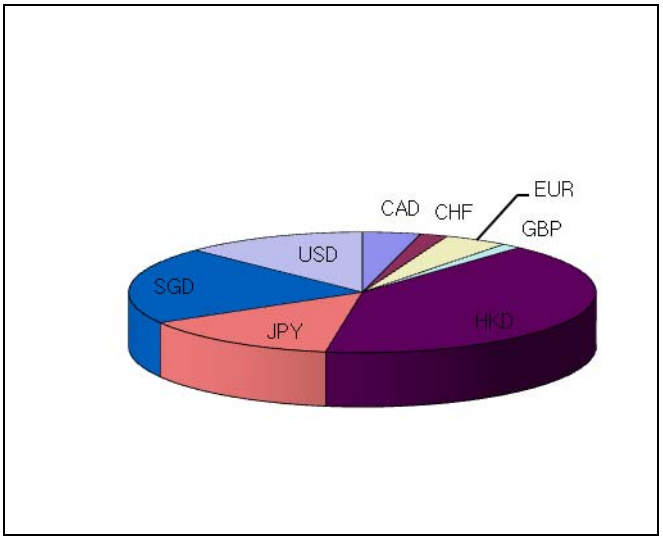

[2011.02.28 현재 / 단위 : 억원,%]

거래통화	해외주식	
	금액	비중
CAD	10	4.02%
CHF	5	1.90%
EUR	11	4.42%
GBP	4	1.37%
HKD	105	40.80%
JPY	36	14.04%
SGD	54	20.78%
USD	33	12.67%

(5) 국내 파생상품 구성 현황

- 해당 없음

(6) 해외 파생상품 구성현황

(신한아이타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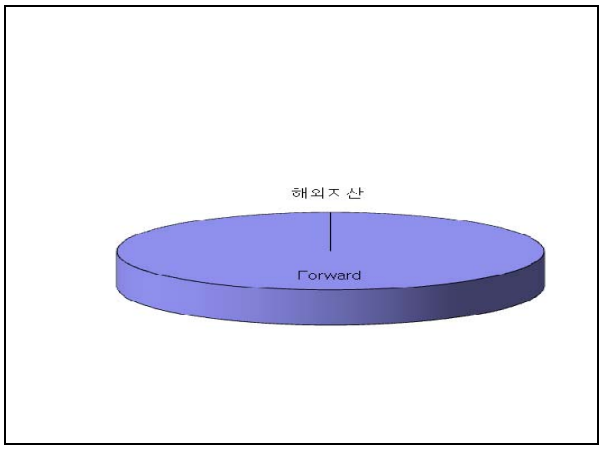

[2011.02.28 현재 / 단위 : 억원,%]

자산구분	평가액	보유비율
Forward	2,376	100.00
해외자산	0	0.0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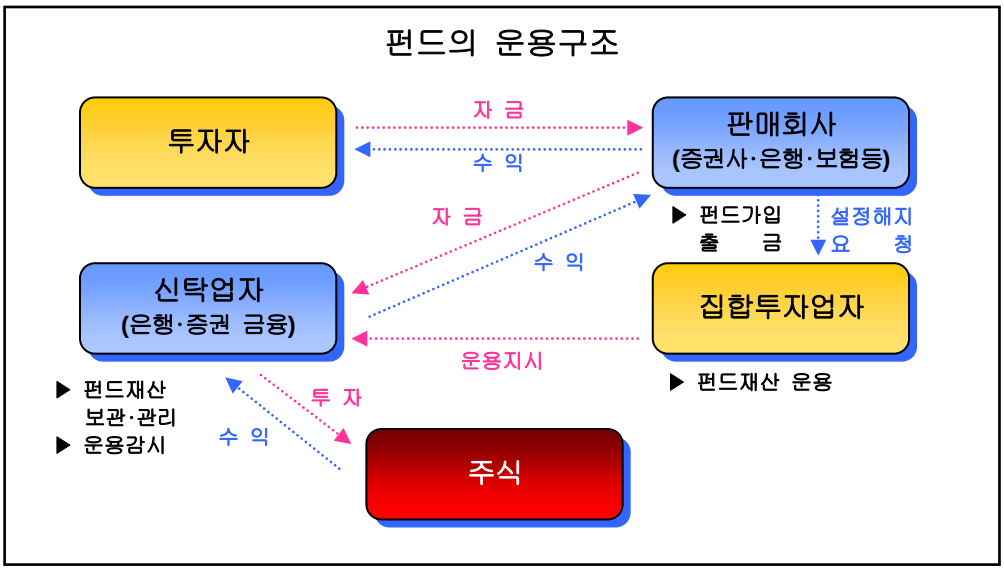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226번지 흥국생명빌딩 19층 우편번호 110-786 전화: 3788-1400 홈페이지: www.goldman-sachs.co.kr
회사 연혁	2007년 9월 : 골드만삭스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자본금	219억
주요주주현황	GSAM. L.P.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업자는 이하의 주요업무를 수행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관계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기타 업무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4) 법 제251조 제4항에 따른 대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가) 은행
   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바) 증권금융회사
   사) 종합금융회사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7)「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위 (나)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집합투자업자는 위 (나)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합니다.

(마)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5조에서 정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로서 그 집합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들,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계정과목	2009.3.31.	2008.3.31.
유동자산	20,561	30,774
고정자산	4,747	2,753
자산총계	**25,308**	**33,527**
유동부채	10,424	9,238
고정부채	0	0
부채총계	**10,424**	**9,238**
자본금(*)	21,900	21,900
자본잉여금	9,853	9,853
이익잉여금	(16,869)	(7,464)
자기자본총계	**14,884**	**24,289**

<요약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08.4.1 ~'09.3.31	'07.4.1 ~'08.3.31
영업수익	14,621	28,711
영업비용	24,055	33,983
영업이익	**(9,434)**	**(5,272)**
영업외수익	75	28
영업외비용	46	1,635
경상이익	**(9,405)**	**(6,879)**
특별이익	-	-
특별손실	-	-
법인세비용	0	675
세전당기이익	**(9,405)**	**(7,554)**

(*) 한국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007년 5월 3일 이사회결의에 의거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상환된 상환우선주 30억원 포함.

라. 운용자산 규모

(신한아이타스 제공)

[2011.02.28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파생	특별자산및 파생	혼합자산및 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814	6,110	10	0	2,427	183	0	4,146	0	0	0	13,69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종래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관련 주식 등)에 대한 운용업무는 Macquarie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이 위탁받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동 운용업무를 업무위탁계약에 의거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L.P., Goldman Sachs (Singapore) Pte.,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Co., Ltd., Goldman Sachs (Asia) L.L.C. 및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Brasil LTDA가 담당하며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변동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

(1)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의 위탁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운용업무를 위탁합니다.

-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 - 미달러화 헤지(미달러화/원화 헤지업무는 주로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수행함)를 포함한 총괄적인 하위 운용업무
-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L.P. - 북미 지역 리츠 자산의 하위 운용업무
- Goldman Sachs (Singapore) Pte. -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리츠 자산의 하위 운용업무
-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Co., Ltd. - 일본 내 리츠 자산의 하위 운용업무
- Goldman Sachs (Asia) L.L.C. -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리츠 자산의 하위 운용업무
-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Brasil LTDA - 브라질 지역 리츠 자산의 하위 운용업무

(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업무위탁의 책임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 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민법 제756조를 준용합니다. 즉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해외집합투자업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 대한 보수는 집합투자업자 보수에서 지급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업무위탁계약기간의 종료, 업무위탁계약의 해지 등 일정 사유 발생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될 경우에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가)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

상호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
설립준거법	영국
주소	Peterborough Court, 133 Fleet Street, London, EC4A 2BB

(나)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L.P.

상호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L.P.
설립준거법	미국 델러웨어주
주소	200 West Street, New York, New York 10282

(다) Goldman Sachs (Singapore) Pte.

상호	Goldman Sachs (Singapore) Pte.
설립준거법	싱가포르
주소	1 Raffles Link, # 07-01, Singapore 039393

(라)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Co., Ltd.

상호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Co., Ltd.
설립준거법	일본
주소	Roppongi Hills Mori Tower, 10-1, Roppongi 6-chome, Minato-Ku, Tokyo, 106-6144, Japan

(마) Goldman Sachs (Asia) L.L.C.

상호	Goldman Sachs (Asia) L.L.C.
설립준거법	미국 델러웨어주
주소	68th Floor, Cheung Kong Center, 2 Queen' s Road Central, Hong Kong

(바)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Brasil LTDA

상호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Brasil LTDA
설립준거법	브라질
주소	Av. Presidente Juscelino Kubitschek, no. 510, 7th floor, São Paulo – SP – Brazil – CEP 04543-000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1)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로 신한아이타스㈜를 선임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및 결정, 이 투자신탁의 활동과 관련한 장부, 기록 및 명세서의 보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장부 등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열람을 위해 제공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보수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에서 지급됩니다.

(2)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업무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8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3) 매매주문업무의 위탁 : 종래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관련 주식 등)에 대한 매매주문업무는 Macquarie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이 위탁받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매주문업무를 위탁합니다.

-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 - 미달러화 헤지(미달러화/원화 헤지업무는 주로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수행함)를 포함한 매매주문 업무
-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L.P. - 북미 지역 리츠 자산의 매매주문 업무
- Goldman Sachs (Singapore) Pte. -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리츠 자산의 매매주문업무
-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Co., Ltd. - 일본 내 리츠 자산의 매매주문업무
-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Brasil LTDA - 브라질 지역 리츠 자산의 매매주문업무

(4) 후선지원업무의 위탁: 종래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관련 주식 등)에 대한 후선지원업무는 Macquarie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이 위탁받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집합투자업자는 고객 보고, 펀드 회계, 평가, 리서치 및 기타 관련 후선 업무 등 후선 지원 및 서비스 제공 업무를 Goldman Sachs Services Private Limited("GSSPL")에 위탁합니다. 위탁에 따른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GSSPL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호	Goldman Sachs Services Private Limited ("GSSPL")
설립준거법	인도 방가로르
주소	Crystal Downs, Embassy Golf Links Business Park, Off Intermediate Ring Road, Bangalore 560 071, INDIA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번지 ☏ 3455-2114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citibank.co.kr

(2) 주요업무

(가) 주요업무

신탁업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수행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등
-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나)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가)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신탁업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 제나)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가 법령,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마)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안됩니다.
- 해당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에 한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사)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아)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차)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이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신탁업자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와 이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3) 신탁업자의 변경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새로운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업자의 책임 및 의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만 신탁업자는 사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탁업자 변경은 수익자총회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 아이타스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02) 2168-0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m

(2) 주요업무

(가) 주요업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수행합니다:

- 기준가격 계산 업무
- 투자신탁의 활동과 관련한 장부, 기록, 명세서의 보관 및 동 장부, 기록 등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열람을 위해 제공하는 업무
-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거나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그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채권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주소및 연락처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 02-399-335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7번지 유화빌딩 9층 ☏ 02-398-3900	서울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5층 ☏ 02-3215-1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bond.co.kr	www.npricing.co.kr

(2) 주요업무

(가) 주요업무

채권평가회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수행합니다: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평가정보 제공.

(나) 채권평가회사의 의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및 수익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소집, 운영 및 의결권행사방법

(가)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또한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다) 위 (가)항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만으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라)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마) 수익자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상의 수익자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동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바)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사)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위 (라)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음)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함)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자)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위 (바)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합니다.

(차) 위 (라)항, (바)항, (아)항, (자)항은 위 (다)항에 의한 수익자총회에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카)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타) 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함)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기타 법령 및 동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3)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가) 법상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해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 (가)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 (가)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 (다)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합니다.

(4)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가)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나)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위 (가)힝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위 (1)의 (라)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합니다.

(라)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마)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위 (라)항에 따른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자명부

(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기준일이라 합니다")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라)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라)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바) 위 (마)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합니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경우에만 기준일의 실질수익자에 관한 위 (마)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 위 (바)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아) 집합투자업자가 위 (다)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 제4항의 전단을 준용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및 경비를 공제한 후,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사는 해당 모든 조세 및 환매수수료를 공제한 이후 수탁회사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 서류의 열람; 등초본 교부 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들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 하지 못합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나 판매회사들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은 소제기 당사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들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들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입수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시차활용거래 및 관련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법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예외를 전제로, 수익자에게 당해 투자신탁의 자산보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동 정보를 요청한 모든 수익자들에게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제공합니다.

(3)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은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날의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합병계획서에 관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 법 제184조 제4항, 법 제24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 법 제420조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합병・분할・분할합병
- 법 제420조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설정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 미수금,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 규정 제7-11조 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 규정 제7-11조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가)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나)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들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이하 (2)에서 “기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다)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가)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들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나)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7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다)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장부 및 서류

(가)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1년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총리령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나)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다)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라)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마)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바)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사).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아)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자)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헤럴드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서울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8) 설정 및 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 위 (나)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신탁 수익자들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집합투자업자는 위 (나)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http://www.goldman-sachs.co.kr),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들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게시가 되도록 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가)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함)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이하 "자산운용보고서"라 합니다) 및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 법 제8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투자중개업자의 평가 및 선정은 해당 분야에 따라 분기별로 이루어집니다.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거래	1) 지분증권 매매 - 거래증권사 :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리서치/프리젠테이션능력, 정보제공/영업능력, 매매업무수행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2) 채무증권 매매 - 중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업무의 편의성 등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장내파생상품거래	1) 지분증권관련장내파생상품거래 - 리서치자료제공, 거래 편의성 및 정확성 등과 같은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됩니다. 2) 채무증권관련장내파생상품거래 - 시장점유율, 재무건전성, 주문실행의 신속,정확성, 시장분석정보서비스등과 같은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됩니다.

[별첨1] 당해 투자신탁과 관련한 이해상충의 일반적 분류

당해 투자신탁과 관련한 이해상충의 일반적 분류

The Goldman Sachs Group, Inc.는 세계적인 종합 서비스 투자 은행이며, 브로커-딜러, 자산운용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참여자입니다. 이와 같이 The Goldman Sachs Group, Inc.는 투자자, 투자은행, 리서치 제공업자, 자산운용업자, 투자자문업자, 재무관리자, 자문업자, 시장 조성자, 고유계좌거래자, 프라임브로커, 대주(lender), 대리인 및 본인으로 행위하며, 당해 투자신탁이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글로벌 채권, 통화, 상품, 주식 및 기타 시장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의 운용, 판매, 투자활동, 사업운영 또는 판매에 종사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여, The Goldman Sachs Group, Inc., Goldman Sachs의 자산운용부문, 집합투자업자 및 그 계열회사, 이사, 파트너, 수탁자, 매니저, 구성원 및 임·직원(본 "잠재적 이해상충"항의 목적상 총칭하여 "골드만삭스"라 함)들은, 당해 투자신탁의 운용 업무 외에 다른 업무 및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이러한 업무들과 관련된 보수(compensation)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 및 이해관계 중에는 당해 투자신탁 및 그 업무제공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매입 또는 매도하는 유가증권, 증서 및 회사들에 대한 잠재적인 다양한 자문, 거래, 재무 및 기타 업무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수익자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고려사항에 해당하며, 이는 당해 투자신탁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신탁을 적절하게 운용해야 할 자신의 의무에 따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반면, 상기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골드만삭스에 대한 수수료, 배정, 보상 또는 기타 이익(골드만삭스의 사업관계와 관련된 혜택 포함)은, 당해 투자신탁을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제공하는 특정 포트폴리오, 투자, 서비스공급회사 또는 기타 결정의 결과로, 당해 투자신탁에 대해 적절한 다른 결정을 내렸더라면 지급되었을 보수, 할당, 보상 또는 기타 이익 보다 클 수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 그 판매인력 및 기타 재무서비스제공업자들은 그들이 판촉활동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당해 투자신탁의 판촉이나 기타 당해 투자신탁과의 기타 거래와 관련되어 서로 상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 당해 투자신탁 및 골드만삭스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들 및 계좌들 간에 투자기회를 배정함으로써 골드만삭스 또는 그 인력의 재무 이익이나 기타 이익으로 인해 잠재적인 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오직 이러한 요소에 기초하여 투자기회 배정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신탁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익이 된다고 믿는 바에 따라 당해 투자신탁을 위한 투자결정을 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결정은 골드만삭스나 다른 펀드 또는 계좌들에 대한 자문이나 투자결정과 상이하고 이와 상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들 또는 계좌들은 당해 투자신탁이 매수포지션을 취했거나 취할 예정인 증권을 공매도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나 다른 펀드 또는 계좌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은 당해 투자신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해 투자신탁이 취한 조치들은 골드만삭스 또는 다른 펀드들이나 계좌들에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당해 투자신탁이 아니라 골드만삭스를 위하여 거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당해 투자신탁 역시 그러합니다.

- 골드만삭스의 인력은 이들이 판촉하거나 운용하는 다른 계좌 또는 상품과 비교하여 이러한 인력이 판촉하거나 운용하는 계좌 또는 상품에 대해 상이한 수준의 경제적 이해관계 및 기타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는 그가 소유하는 시장 또는 기타 정보, 분석, 기술적 모델 또는 리서치를 당해 투자신탁에 제공하거나 당해 투자신탁을 위해서 이에 따라 거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 투자신탁은 골드만삭스가 본인으로 행위하거나 골드만삭스가 이러한 거래에 대해 당해 투자신탁 및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행위하는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거래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집합투자업자가 이해상충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신탁의 관련 포트폴리오를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집합투자업자는 서면화 된 이해관계상충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거래들이 당해 포트폴리오의 최상의 이익과 부합하며, 독립당사자 간의 통상적인 상거래 조건에 따라 시행된다면, 집합투자업자는 수시로 본인이나 대리인으로서 당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는 당해 투자신탁에 대해 브로커, 딜러, 대리인, 대주 등으로 행위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모든 수수료, 보수 및 기타 보상을 받습니다.

- 당해 투자신탁을 위해 거래되는 유가증권은 골드만삭스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 또는 계좌를 위한 거래와 통합될 수 있으나, 반드시 그와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가격이 적용될 수 없거나 또는 매수 또는 매도 대상 유가증권 전량에 대한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다양한 가격에 대한 평균 가격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당해 투자신탁은 평균가격으로 책정(charged)되거나 계상(credited)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통합이 당해 투자신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당해 투자신탁과 골드만삭스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 또는 계좌에 제공되는 중개서비스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브로커로부터 수령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당해 투자신탁 및 다른 펀드 및 계좌에 제공되는 상대적인 중개서비스 금액에 기초하여 다른 펀드 및 계좌에 불균형하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적절하다고 믿는 바에 따라, 그리고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집합투자업자의 방침에 따라 의결권대리행사를 결정할 수 있는 한편, 당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와 관련한 집합투자업자에 의한 의결권대리행사결정은 골드만삭스의 기타 고객 또는 다른 사업 부분이나 사업단위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 규제상 제한 (상이한 펀드 및 계좌 간의 포지션의 통합과 관련된 제한을 포함) 및 골드만삭스 내부방침은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보유하는 정보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본 항에 명시된 활동과 별도로 골드만삭스의 현재 및 향후 활동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이러한 내용 및 골드만삭스의 다른 사업 및 이해관계에 따라 제공되는 기타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해 더 상세히 기재하고 있는 다음 항을 주의깊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결정,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 및 투자기회의 배정과 관련된 잠재적 이해상충

골드만삭스의 다른 활동은 당해 투자신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신탁의 운용사로서 그 의무에 따라 당해 투자신탁을 위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의 다른 활동은 당해 투자신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기 "당해 투자신탁과 관련한 이해상충의 일반적 분류"에 기재된 바와 같은 골드만삭스의 다양한 활동 및 이해관계의 결과로, 당해 투자신탁은 골드만삭스가 투자은행서비스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법인들과 다수의 사업관계를 가지고 투자하거나 거래를 체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또한 골드만삭스가 시장을 조성하거나 달리 기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증권에 대한 거래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당해 투자신탁을 적절히 운용할 의무에 따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한 결정을 하는 한편, 상기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골드만삭스에 대한 수수료, 배정, 보상 및 기타 이익(골드만삭스의 사업관계와 관련한 혜택 포함)은, 당해 투자신탁을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제공하는 특정 포트폴리오, 투자, 서비스공급회사 또는 기타 결정의 결과로, 당해 투자신탁에 대해 적절했을 다른 결정을 내렸을 경우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또는 중개회사들의 재무 및 기타 이해관계는 골드만삭스 또는 중개회사들의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촉활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

- 골드만삭스, 그 인력 및 기타 금융서비스공급회사들은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 촉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그 인력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이나 기타 상품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판매와 관련되는 보상 및 수익은 제공되거나 모집될 수 있는 특정 펀드 다른 상품에 대한 서비스 및 판매와 관련된 보상 및 수익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 판매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그 판매인력은 당해 투자신탁이나 그 수익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보상이나 수수료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및 그 자문인력이나 기타 인력은 또한 운용자산규모의 증가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는 또한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보다 높을 수 있으며, 당해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거래들이나 당해 투자신탁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골드만삭스 및 그 인력에 대한 보상 및 수익은 다른 펀드들이나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상 및 수익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로 인하여 당해 투자신탁에게 부과되거나 당해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가 증가하거나 보수가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골드만삭스 및 인력은 비계열투자자문회사가 자문을 제공하는 계좌와 관련되는 것보다 골드만삭스가 자문사로 행하는 계좌와 관련하여 더 큰 보상 또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상의 차별성은 골드만삭스가 비계열투자자문회사에게 일부 자문보수를 지급하거나 포트폴리오 운용, 위탁매매나 계좌관리서비스를 포함하여 다른 보상약정에 대해 자문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됩니다. 보상의 차별성으로 인해 비계열투자자문회사보다 골드만삭스를 추천하거나 다른 계좌에 비하여 어느 한 계좌에서 거래들을 다르게 실행하는 일부 골드만삭스 및 그 인력에 대해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는 또한 당해 투자신탁을 추천하거나 당해 투자신탁과의 거래에 관여하는 판매회사, 컨설턴트나 기타 사람들과 관계를 갖거나 이들로부터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를 제공,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업계 및 컨설턴트 후원 컨퍼런스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그 인력 및 그 사업에 가치가 있다고 간주되는 컨설턴트나 기타 제3자로부터 교육 서

비스, 데이터 관련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로부터 제공받은 상품 및 서비스는 골드만삭스가 투자운용절차에 대한 컨설턴트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컨설턴트 및 당해 투자신탁의 장래 투자자에 대한 컨설팅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당사자는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기타 골드만삭스의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골드만삭스 또는 당해 투자신탁으로부터 보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공하거나 운용하는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컨설턴트, 서비스제공자 및 기타 중개회사와 수입 또는 수수료 공유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또한 업계 전반 또는 주 및 지방자치조직의 회원비를 지불하거나 달리 신탁자, 수탁자, 컨설턴트, 일반사무관리회사, 주 및 지방자치조직 직원들 및 기타 고객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투자업계 참여자를 위하여 스폰서 컨퍼런스 및 교육 포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에서 골드만삭스의 회원 지위는 골드만삭스가 이러한 컨퍼런스 및 교육 포럼에 참여하고, 골드만삭스가 컨퍼런스 참여자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컨퍼런스 참여자들의 시각과 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 직원들을 포함한 골드만삭스의 인력은 발행인, 판매회사, 컨설턴트 및 기타 당해 투자신탁에 투자를 하거나 당해 투자신탁에의 투자를 권유하거나 당해 투자신탁을 판매할 수 있는 자들과 위원회, 자문, 중개 또는 기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하여 골드만삭스는 고객 또는 고객의 인력과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하여, 기관에 대해 자선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인력은 또한 정치적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동 항에 기재된 관계 및 약정의 결과로, 컨설턴트, 판매회사 및 기타 당사자들은 당해 투자신탁의 판촉이나 특정 포트폴리오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당해 투자신탁의 판촉 또는 당해 투자신탁과의 기타 거래에 수반되는 상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골드만삭스 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신탁, 고객/GS계좌(하기 정의됨) 및 기타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수권 딜러 및 기타 금융중개회사("중개회사들")에 금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모집보수, 판매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판매대행보수에 추가하여 이러한 지급금은 당해 투자신탁, 고객/GS계좌 또는 기타 상품에 별도로 부과되기보다는 골드만삭스의 자산이나 골드만삭스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부터 지불됩니다. 이러한 지급금은 다른 무엇보다도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중개회사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당해 투자신탁, 고객/GS계좌 및 다른 상품의 마케팅(포트폴리오, 고객/GS계좌 및 다른 상품을 우선/추천펀드목록이나 수시로 중개회사들이 후원하는 특정 판매프로그램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이와 관련되는 지급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및 기타 회의 등에서 중개회사의 등록된 대표자 또는 영업인력과의 만남, 연수 및 교육 지원, 투자자들에게 당해 투자신탁, 고객/GS계좌 및 다른 상품을 소개하는 대가인 "중개수수료(finders)" 또는 "소개수수료(referral fees)", 당해 투자신탁, 고객/GS계좌 및 다른 상품의 판촉을 지원하는 대가인 마케팅 지원 수수료(여기에는 중개회사들의 고객, 등록된 대표자 및 영업인력과의 통신 판촉 활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및/또는 당해 투자신탁, 고객/GS계좌 및 기타 상품의 판매 및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의도된 기타 특정 서비스. 이러한 지급금은 고정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중개회사가 유지하는 고객계좌수를 기초로 할 수도 있으며, 해당 중개회사 관련 고객들에게 판매되거나 또는 이들이 보유하는 지분가치 비율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기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금은 또한 적용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판매 컨테스트 및/또는 판촉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특정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비현금/현금 인센티브 협정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용법률을 전제로 이러한 지급금은 또한 교육, 영업 및 판촉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중개

회사들 및 그 영업인력 및 거래처들의 출장비, 식대, 숙박비 및 접대비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추가적인 지급을 통해 이러한 상품으로부터 서비스를 위해 지급되는 보수에 추가하여 하위계정화 관련 업무(sub-accounting), 일반사무관리 및/또는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 대한 업무처리서비스를 위해 중개회사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당해 투자신탁과 기타 골드만삭스 계좌들 간의 투자기회의 배정과 관련한 잠재적인 이해상충

- 골드만삭스 또는 그 인력(집합투자업자의 인력을 포함)이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을 비롯하여 골드만삭스는 당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 또는 거래 결정의 배정과 관련하여 잠재적 상충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당해 투자신탁은 골드만삭스(집합투자업자 포함)가 운용/자문하거나 골드만삭스(집합투자업자 포함) 또는 그 인력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현재나 장래의 계좌들이나 펀드들(총칭하여 "고객/GS계좌")과 투자기회에 대해 경쟁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GS계좌들은 골드만삭스(집합투자업자를 포함)에 성과기반보수, 주식, 기타 이익 등 더 큰 보수 또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과 유사한 투자목적을 가지는 고객/GS계좌를 운용하거나 자문할 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당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이나 기타 증서, 분야 또는 전략에 대한 투자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이러한 투자자산의 이용가능성이나 유동성이 제한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과 다른 고객/GS계좌간에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가능성이 제한되는 상황은 신흥시장, 고수익 유가증권, 채권형 유가증권, 규제산업 및 IPO/신규발행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고객/GS계좌들(골드만삭스 및 그 인력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계좌들을 포함), 골드만삭스의 다른 고객들 또는 골드만삭스 자체에 의한 투자 거래는, (당해 투자신탁을 비롯하여) 특히 소규모 자본화, 신흥시장 또는 덜 유동적인 전략에 있어서 고객/GS계좌들이 보유한 유가증권과 관련한 가치, 가격 또는 투자전략을 희석하거나 또는 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재량과 각 고객/GS계좌에 대한 선관의무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방식으로 당해 투자신탁과 기타 고객/GS계좌들간에 투자기회들을 배정하고 매수 및 매도 결정을 내리기 위한 방침들과 절차들을 개발하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방침들은 고객/GS계좌들 전반에 걸쳐 제한된 투자기회들을 비례 배분하도록 하지만, 다른 많은 경우에 배분은 집합투자업자의 각 고객/GS계좌의 목적, 제한 및 요건과 비교하여 제한된 투자기회들을 최선으로 활용하는지를 집합투자업자가 선의로 평가하는 것에 기초한 수많은 다른 요소들을 반영하며, 아래 기재된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을 적용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계좌 관리와 관련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모든 고객들을 합리적으로 대우하고자 하며, 어떤 경우에는 아래 기재된 요소들을 적용하여 특정 계좌들이 다른 계좌들이 받지 못하는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비례에 따르지 않은 배분은 많은 주식형 계좌에서보다도 채권(고정수익) 포트폴리오 운용 영역에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이는 벤치마크 요소들, 헷지전략들의 상이함이나 기타 이유 때문이며, 채권(고정수익)전략에 있어서 복수의 적절한 또는 현저하게 유사한 투자자산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례에 따르지 않은 배분이 다른 영역에서도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재된 요소들의 적용으로 골드만삭스 및 그 직원들이 다른 고객/GS계좌들(당해 투자신탁 포함)에게 배분되지 않은 배분이나 투자기회를 수령하도록 하는 배분이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배분은 다양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항상 운용 자산에 따라 비례하여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들은 다양한 요인들에 대하여 배분관련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i) 계좌투자한도, 투자 목적 및 지침, (ii) 다양한 전략들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투자, (iii) 공매도 또는 기타 기법을 통한 헤지 능력 포함한 고객별로 특화된 투자지침 및 제한, (iv) 해당 고객/GS 계좌들의 예상 장래 능력; (v) 전적인 지시에 따르는 위탁매매계좌, (vi) 계좌들의 조세민감성, (vii) 적합성 요건 및 투자기회의 성질, (viii) 계좌 거래회전율 지침, (ix) 투자를 위한 현금의 이용가능성, (x) 해당 계좌의 상대적인 규모 및 장래 예상 규모, 및/또는 (xi) 기타 적절한 투자기회들의 이용가능성 및/또는 (xii) 최소 액면가, 최소추가투자금액, 최소투자금액 및 거래단위(round lot) 고려사항을 고려하여 본건 펀드들과 기타 고객/GS계좌들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의 고려사항은 (i) 다른 계좌에 대한 상대적 투자기회 매력, (ii) 계좌에 대한 포지션 집중, (iii) 벤치마크에 대한 기회의 적정성 및 계좌의 벤치마크 민감도, (iv) 계좌의 위험감수도, 위험변수 및 전략 배정, (v) 골드만삭스가 해당 계좌를 위한 투자매력이 있다고 여기는 증권이나 증서로의 교체 기회 활용, (vi) 조별방식의 거래(pair trade)에 대한 포지션 헷지와 관련되는 고려사항 및/또는 (vii) 계좌를 업계에 일부 노출하는 것.과 관련되는 고려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어느 한 고객/GS계좌에 대한 골드만삭스 또는 그 인력의 이해관계로 인해, 또는 골드만삭스가 다른 고객/GS계좌와 관련하여 어느 한 고객/GS계좌의 배정으로부터 더 큰 보수나 보상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당해 투자신탁 및 기타 고객/GS계좌 간에 투자기회의 배정으로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을 지라도 집합투자업자는 이러한 이해관계나 더 큰 보수나 보상에 기초하여 배정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 계좌들간의 배정 결정은 어느 한 계좌나 계좌 그룹에 대해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기회, 전략들이나 특정 매수나 매도가 당해 투자신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이상의 고객/GS계좌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나 계열회사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는, 규모, 거래조건이나 시기를 고려할 때 다른 고객/GS계좌들 보다는 당해 투자신탁에게 적합하거나 가능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고객/GS계좌에 대해 적격한 모든 투자거래를 고객/GS계좌들에게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고객/GS계좌들을 위하여 매수 또는 매도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의 투자금액, 시기, 구조 또는 조건은 기타 고객/GS계좌의 투자자산 및 성과와는 상이할 수도 있으며, 성과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투자신탁 운용과 관련한 기타 잠재적 이해상충

골드만삭스가 보유하는 정보와 관련한 잠재적 제한 및 문제점

- 골드만삭스의 서로 다른 사업부문들 간에 정보차단벽이 구축되어 있는 결과로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골드만삭스의 다른 분야의 인력과의 논의가 가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본건 펀드들을 운용할 때 골드만삭스의 다른 사업부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그리고 정보차단벽에 관한 관련 법률 및 집합투자업자의 방침과 절차를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집합투자업자는 골드만삭스의 다른 분야의 인력 또는 골드만삭스와 연결되지 않은 자와 상담하거나 이러한 인력으로 구성된 투자방침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인력과의 협의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무 이행은 골드만삭스 내 또는 다른 곳에서의 주요 책임분야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집합투자업자와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들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집합투자업자의

장래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고객활동, 고유활동 또는 기타 활동에 관련되어 이들이 알고 있거나 이들에 의해 개발된 정보 또는 전략을 당해 투자신탁을 위해 사용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공개 배포 전 리서치나 분석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당해 투자신탁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시로 골드만삭스 및 그 인력이 개발한 특정 펀더멘탈 분석 및 고유의 기술적 모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분석 및 모델에 따라 당해 투자신탁을 위한 거래를 실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또한 골드만삭스는 정보를 구하거나 기타 고객 또는 활동과 관련되어 골드만삭스 인력에게 알려져 있거나 인력에 의해 개발되거나 사용되는 정보, 투자전략, 기회 또는 아이디어를 당해 투자신탁을 위해 사용하거나 또는 공유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인력 또는 당해 투자신탁에 대해 자문하거나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골드만삭스 인력을 포함하여, 골드만삭스 및 그 특정 인력은 모든 골드만삭스 인력이 활용가능하지 않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은 당해 투자신탁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행위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및 다른 계좌들이 고유계좌 또는 다른 계좌를 위해 거래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기간 동안 포트폴리오 또는 고객/GS계좌들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는 수시로 중요한 미공개정보 또는 당해 투자신탁이 투자자산을 매수 및 매도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유연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당해 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증권거래의 매수 및 매도를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일이 금지됩니다.

- 골드만삭스는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브로커-딜러, 뱅킹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프라임 위탁매매, 일반사무관리 및 기타 업무들을 당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시장 및 유가증권과 연관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일명 골드만삭스증권서비스("GSS")로 알려져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통하여 GSS 및 기타 골드만삭스의 다른 사업부문들은 특정 시장들, 투자자산들 및 투자신탁들의 현황 및 투자신탁 운영업자들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전반적으로 입수할 것입니다. 본 문단에 기재된 활동 및 이러한 활동들로부터 연유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지식의 입수 결과 골드만삭스의 일부 사업부문들은 시장, 투자자산 및 투자신탁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어느 포트폴리오가 보유하는 투자자산을 처분, 보유하거나 이해관계를 증진하거나 혹은 포트폴리오를 대신하여 특정 포지션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특히 포트폴리오를 대신하여 투자결정을 내리는 집합투자업자의 인력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골드만삭스 및 집합투자업자의 고유 활동 및 다른 계좌를 위한 활동과 관련한 잠재적 이해상충

- 당해 투자신탁 투자활동의 결과는 골드만삭스가 그 고유계좌를 위해 달성한 성과 및 골드만삭스가 다른 고객/GS계좌를 위해 달성한 성과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각 투자목적 및 지침에 따라 당해 투자신탁 및 그들이 운용하는 다른 고객/GS계좌를 운용합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현재나 장래의 고객/GS계좌에 대하여 투자수익과 투자와 관련된 행동의 시기

나 특징, 기존투자 방식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당해 투자신탁에 제공한 자문과 상반되거나 상충하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 또는 고객/GS계좌가 기도하는 거래가 당해 투자신탁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및 하나 이상의 고객/GS계좌는 당해 투자신탁이 동일하거나 또는 상이한 전략(반대인 경우를 포함)을 취하고 있는 포지션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투자신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해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을 매수하고, 골드만삭스 또는 고객/GS계좌는 동일한 유가증권에 대해 매도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뒤이은 공매도는 당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포트폴리오는 유가증권에 대해 매도포지션을 취할 수 있으며, 골드만삭스 또는 기타 고객/GS계좌들은 동일한 유가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뒤이은 매수는 당해 투자신탁의 공매도 익스포져의 기초 포지션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가격의 상승은 당해 투자신탁에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 당해 투자신탁과 관련한 포트폴리오 결정이 골드만삭스 또는 다른 고객/GS계좌들에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에 의한 매수포지션의 판매 또는 매도포지션의 설정은 골드만삭스 또는 다른 고객/GS계좌들에 의해 공매되는 동일한 증권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골드만삭스 또는 다른 고객/GS계좌에게는 이익이 됩니다). 포트폴리오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또는 유가증권의 매도포지션의 환매수는 골드만삭스 또는 다른 고객/GS계좌들이 보유하는 동일한 유가증권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골드만삭스 또는 다른 고객/GS계좌에 이익이 됩니다).

- 또한, 하나 이상의 고객/GS계좌 및 골드만삭스가 행한 어느 투자자산의 거래는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 가격 또는 투자전략(특히 소형주, 신흥시장 및 비유동적 전략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희석시키거나 달리 불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는 당해 투자신탁과 관련한 포트폴리오 결정이 다른 고객/GS계좌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사용되는 리서치 또는 기타 정보를 근거로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또는 고객/GS계좌가 당해 투자신탁을 위한 유사한 포트폴리오 결정 또는 전략(포트폴리오 결정이 동일한 리서치 분석이나 기타 정보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에 앞서 또는 동시에 포트폴리오 결정이나 전략을 실행할 때 시장영향, 유동성 제약 또는 기타 요소로 인해 당해 투자신탁은 유리하지 않은 거래 성과를 얻을 수 있고, 포트폴리오 결정 또는 전략을 실행하는 비용이 증가되는 등 당해 투자신탁이 달리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에 골드만삭스는 고객/GS계좌들에 미치는 이러한 결과를 제한시키기 위한 내부 방침 및 절차의 도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본건 포트폴리오가 유가증권의 매수나 처분을 포함하여 특정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이러한 특정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하여 골드만삭스의 이사 및 임직원은 자신의 고유 계정(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하여 골드만삭스가 운용하는 투자펀드들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유가증권이나 기타 투자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사, 임직원은 상이한 거래 및 투자전략, 또는 제약으로 인해 당해 투자신탁을 위한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상이한 포지션을 취하거나 상이한 시점에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당해 투자신탁이 이러한 개인 거래에 의해 크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각 집합투자업자 및 골드만삭스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정보를 소유하는 투자전문가들 등이 개인 계정을 통하여 유가증권 거래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침 및 절차를 수립하였습니다. 각 집합투자업자 및 골드

만삭스는 집합투자업자가 이러한 인력, 즉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고객/GS계좌 및 당해 투자신탁과 관련되는 잠재적 상충을 수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인력에 의한 특정 개인유가증권거래와 관련한 윤리강령(총칭하여 “윤리강령”) 및 감독 절차를 채택하였습니다. 윤리강령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의 인력은 모든 적용되는 법규 및 집합투자업자에 적용되는 모든 선관의무 및 시장남용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골드만삭스의 고객(고객/GS계좌를 포함)들은 고객 보고서 수령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들의 인력들이 관리하는 계좌들이 아닌 고객 거래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의 거래 또는 시각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들은 당해 투자신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투자신탁은 다른 고객/GS계좌들의 자본금 증가 및 자본금 인출뿐만 아니라 매수 및 매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및 시장 움직임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거래가 적고 유동성이 적은 시장에서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투자신탁 운용은 골드만삭스에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해 투자신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골드만삭스와 계열관계이거나 골드만삭스가 지분, 채무관계나 기타 이해관계를 가지는 회사들의 유가증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당해 투자신탁은 다른 고객/GS계좌들의 채무가 해소되거나 투자를 회수하거나 당해 투자신탁이 특정 투자자산을 회수하여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투자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자산의 매입, 보유 및 매도는 이러한 회사들에 대한 골드만삭스 또는 다른 고객/GS계좌의 고유 투자자산 및 그 활동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와 하나 이상의 고객/GS계좌(당해 투자신탁 포함)은 또한 동일 발행인의 다양한 등급의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 이상의 고객/GS계좌는 당해 투자신탁이 투자한 특정 발행인에 대하여 권리 실행을 모색하거나 권리를 실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당해 투자신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GS계좌가 발행인의 채무성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당해 투자신탁은 동일 발행인의 주식형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발행인이 재무상 또는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주식형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포트폴리오가 발행인의 회사정리(reorganization)를 선호하는 반면, 채무성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고객/GS계좌는 발행인의 청산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또한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 이상의 고객/GS계좌(당해 투자신탁 포함)을 대신하여 공동으로 특정 발행인에 대하여 권리를 모색하거나 실행할 수 있으며, 또는 골드만삭스 직원들은 이러한 권리를 모색하거나 실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골드만삭스 및 다른 고객/GS계좌의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당해 투자신탁을 위한 거래는 골드만삭스 및 다른 고객/GS계좌가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대하여 특정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격이나 조건보다 더 유리하지 않아 손해를 입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력은 다른 고객/GS계좌의 운용에 중요한 발행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당해 투자신탁을 대신하여 발행인의 유가증권을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골드만삭스는 당해 투자신탁이나 기초유가증권, 통화 또는 증서에 대한 파생상품 또는 달리 당해 투자신탁의 성과에 기초할 수 있는 파생상품을 설정, 인수, 매도, 발행하거나 또는 파생상품의 모집대리인이나 판매회사로서 행할 수 있습니다(이하 통칭하여 “구조화투자상품”이라 함). 구조화투자상품의 가치는 포트폴리오의 순자산가치 및/또는 포트폴리오의 투자자산의 가치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골드만삭스(그 인력 또는 고객/GS계좌 포함)은 당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있고, 당해 투자신탁

의 수익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함으로써 파생포지션을 헷지할 수 있고, 수익자들에 대한 통지 없이 언제든지 그 투자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매할 권리를 가집니다. 구조화투자상품과 관련하여, 그리고 헷지, 자산재조정(re-balancing) 및 기타 목적을 위하여 고객/GS계좌들은 포트폴리오가 보유하는 투자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의 투자자산의 성과를 모방하거나 또는 헤지하고자 하는 합성포지션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지션들은 포트폴리오 포지션과 다를 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그에 반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투자는 판매수수료나 기타 보수나 수수료의 대상이 아닌 클래스를 포함하여 포트폴리오의 수익권 클래스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수익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에 대한 주주의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을 통하여 안전이 확보된 유사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골드만삭스는 만일 동 주주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을 환매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들과 관련 환매는 중요할 수 있으며, 수익자들에 대한 통지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구조 기타 성격은 당해 투자신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생상품은 당해 투자신탁의 레버리지 투자를 나타낼 수 있으며, 투자의 레버리지 성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또는 다른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다른 경우보다 더 빠르게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대규모 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상업적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골드만삭스는 사실상 이러한 환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운용 및 포지션, 유연성 및 분산전략 및 당해 투자신탁의 계좌를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보수, 경비 및 기타 비용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골드만삭스(그 인력 또는 고객/GS계좌 포함)는 당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있고,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함으로써 파생포지션을 헷지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투자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매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투자 및 환매는 중요할 수 있으며 수익자들에 대한 통지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자문하거나 운용하는 허용된 투자신탁(Permitted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잠재적 이해상충

-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당해 투자신탁은 골드만삭스가 자문하거나 운용하는 하나 이상의 투자신탁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투자와 관련하여, 당해 투자신탁은 룩셈부르크 법률 및 관련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신탁의 모든 비용(투자자문 및 관리 보수 및 청약 및 환매 수수료 (있는 경우)) 중 자신의 몫을 지급하며 이로 인하여 포트폴리오는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즉, 골드만삭스가 포트폴리오 및 당해 투자신탁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므로 당해 투자와 관련한 "이중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의 기준 투자자산의 직접 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여하한 수수료 또는 기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여하한 형식의 보상을 수령하는 모든 기타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해 투자신탁에 대한 어떠한 회계 또는 환매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브로커 및 딜러 선정과 관련한 잠재적 이해상충

-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신탁을 대신하여 최선의 체결로 거래를 이행할 브로커 및 딜러를 선정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등가물 및 기타 거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최상의 가격은 통상적으로 본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나 브로커 및 딜러의 선정시 체결 능력, 자본납입 의사,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 재무 지급능력 및 리서치 제공 의사 및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 중개업의 수준 및 결제 능력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을 대신하여 이행되는 거래는 항상 최저 가격 또는 최저 수수료로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부조달(In-Source) 또는 외부위탁(Outsource)할 수 있음.

- 관련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 골드만삭스는 수시로, 그리고 수익자들에 대한 통지 없이 그 일반사무관리자 또는 기타 자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에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관련한 특정 절차들이나 기능을 내부 조달 또는 외부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조달 또는 외부 위탁이 추가적인 이해상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당해 투자신탁에 대한 집합투자업자 자격이 아닌 다른 자격으로 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

당사자 거래 및 본인 거래와 관련되는 잠재적 이해상충

- 적용 법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 투자신탁은 주체(principal)로서 또는 그 고객을 위해 자기의 계산으로 (proprietary basis) 행위하는 골드만삭스가 거래상대방으로서 선물, 유가증권, 통화, 스왑, 옵션, 선도계약이나 기타 증서에 투자하거나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또한 골드만삭스가 당해 투자신탁을 대리하고 거래 상대방을 위하여 행하는 자전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자전거래의 양 당사자들에 대해 서로 상충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당해 투자신탁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당해 투자신탁과 다른 고객/GS계좌 또는 거래 상대방 측의 계좌 모두를 대리할 수 있으며 골드만삭스는 한 당사자 또는 양당사자로부터 보수(compensation)나 기타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투자신탁으로 하여금 이러한 유가증권을 매수하도록 한 골드만삭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오직 고객/GS계좌를 대신하여 골드만삭스나 그 계열사와 함께 당사자거래나 자전거래만 할 것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당해 투자신탁을 위하여 영리 목적의 역할(commercial capacity)로 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

-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골드만삭스는 당해 투자신탁을 위하여 브로커, 딜러, 대리인, 대주(lender) 또는 자문인, 또는 기타 영리적 목적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부과하는 수수료, 가격인상(mark-up), 가격하락(mark-down), 금융자문수수료, 인수 및 모집수수료, 판매보수, 파이낸싱 및 약정 수수료, 중개보수, 기타 보수, 보상 또는 수익, 이율, 제반 조건은 판매 인력을 포함하여 골드만삭스가 골드만삭스 및 판매인력에게 유리한 보수 및 기타 금액을 획득하는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상업적으로 그 시각상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집합투자업자 외의 자격으로 행하는 경우 보수(compensation)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 투자신탁은 이러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법률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골드만삭스(및 그 인력 및 기타 판매회사)는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브로커, 딜러, 대리인, 대주(lender), 자문인 또는 기타 상업적 자격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일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보수 및 기타 금액을 보유할 권한을 가지며, 당해 투자신탁이나 그 수익자들에 대하여 이를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들에 의해 지급되어야 하는 보수나 보상은 골드만삭스가 위와 같은 보수나 기타 금액들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감소되지 않습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당해 투자신탁이 참가하고자 하는 주식대차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신탁은 독립기업기준으로 투자자문회사의 계열회사를 유가증권 대차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투자제한의 규정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위임인이 단독 재량으로 결정한 바에 따라 골드만삭스와 협의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율 및 기타 조건에 따라 골드만삭스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가 당해 투자신탁과 관련하여 브로커, 딜러, 대리인, 대주(lender), 자문인 또는 기타 상업적 자격으로 행할 때, 골드만삭스는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상업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투자신탁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임 중개 또는 당해 투자신탁을 포함하는 대차약정과 관련하여 골드만삭스는 언제든지 또는 수시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해 투자신탁은 자체 신용상태를 근거로 하여 거래상대방들과의 사업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하여 골드만삭스는 당해 투자신탁의 사업관계 설정과 관련하여 골드만삭스의 신용을 이용하도록 할 의무가 없으며, 당해 투자신탁의 거래상대방들이 당해 투자신탁의 신용도를 평가함에 있어 골드만삭스의 신용을 신뢰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위탁매매 및 의결권대리행사와 관련한 잠재적 이해상충

-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투자업자를 위한 유가증권의 매입 및 매도는 다른 고객/GS계좌에 대한 주문과 합산하거나 통합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들은 상이한 계좌들에 대한 투자 운용 결정이 별도로 이루어지거나 합산이나 통합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나 지시를 필요로 하거나 지시가 있는 계좌들에 대하여 주문을 합산하거나 통합하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 실제 거래 활동의 결과로 종종 매수 또는 매도 대상 유가증권의 전량에 대해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거나 동일한 거래체결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가격에 대한 평균가격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당해 투자신탁에 대해서 평균가격이 자산에서 차감(charged)되거나 자산에 계상(credited)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통합은 일부 경우에 당해 투자신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 하에서는 합산 또는 통합주문과 관련해 수수료 또는 수수료에 상응하는 이율이 동일하게 당해 투자신탁에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제한도 없이 다른 어떠한 요소들 중에서도 시간대의 차이, 개별적인 거래데스크 또는 글로벌 조직에서의 포트폴리오 운용절차는 개별적이면서 통합되지 않는 체결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 당해 투자신탁, 다른 고객/GS계좌 또는 그 계열회사 또는 인력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거래관계(correspondent relationship)를 통해 집합투자업자의 관점에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결정절차(선물, 고정가격모집 및 장외거래와 관련한 사항 포함)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 고유 리서치(proprietary research) 또는 기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로커(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서치 또는 기타 서비스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 산업 및 유가증권에 대한 리서치보고서, 경제 및 재무자료, 재무공시, 대리권분석, 거래산업세미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호가장비 및 서비스 및 리서치 기반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타 서비스 및 상품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입수한 리서치 또는 다른 서비스는 리서치나 기타 서비스 약정과 관련하여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자를 제외한 고객/GS계좌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모든 당해 투자신탁 및 다른 고객/GS계좌에 관한 서비스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는 당해 투자신탁 및 다른 고객/GS계좌가 지불하는 위탁매매수수료의 금액에 기초하여 당해 투자신탁에 비해 다른 고객/GS계좌에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1인 수수료를 통해 지불된 리서치 또는 기타 서비스는 그 고객의 계좌를 운용하는데 활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고객/GS계좌는 차별적인 혜택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과 다른 고객

/GS계좌들에 제공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규모의 경제 또는 가격 할인에 따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들이 소프트커미션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해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브로커-딜러가 제공하는 거래체결, 청산 및/또는 결제서비스와 통합된 리서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이에 기초하여 리서치를 제공받으면, 전통적 소프트커미션과 관련된 많은 동일한 상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서치는 브로커-딜러가 제공하는 거래체결, 청산 및 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급을 하는데 사용되는 고객 수수료로 효율적으로 지불되며, 집합투자업자들이 지불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결정과정에서 유용하다고 믿는 리서치 또는 기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기 위해 이러한 약정에 의거하여 리서치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로커를 통해 거래를 체결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다양한 정도로 상기 기재된 약정을 맺지 않기로 수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당해 투자신탁을 포함하여 자문대상고객을 대리하여 내리는 의결권 대리행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이러한 결정이 고객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침 및 절차를 채택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결권대리행사 방침 및 절차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실제 의결권대리행사결정은 기타 고객의 이익 또는 골드만삭스 및/또는 그 계열회사의 사업부문 또는 기타 사업단위의 업무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이러한 의결권 대리행사 결정이 그 선관의무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활동에 대한 잠재적인 규제적 제한

- 당해 투자신탁의 활동은 수시로 골드만삭스에 적용되는 규제적 요건 및/또는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고안되거나, 달리 이러한 요건과 관련되는 내부 방침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로부터 자문을 받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이러한 고려사항 중 어떤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특정 유형의 거래를 착수하거나 또는 권고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골드만삭스가 투자은행서비스, 시장조성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고유 포지션을 가지는 회사가 발행하거나 동 회사와 관련되는 특정 유가증권 또는 증서에 대한 자문을 제한하거나 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가 어느 회사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판매 또는 회사를 위한 자문서비스에 관여할 때, 당해 투자신탁은 동 회사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일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인력이 당해 투자신탁이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이사로 재임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자문업무와 골드만삭스의 사업이 확장될수록 이러한 제한된 방침이 투자거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만일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은 동 회사가 발행하거나 골드만삭스의 인수, 판매 또는 자문업무의 대상이거나 골드만삭스 인력이 해당 발행인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유가증권 또는 증서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의 고유 계정 및 고객/GS계좌를 위한 골드만삭스의 투자활동은 또한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들과 권리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산업에 있어서, 특정 신흥시장 또는 국제시장에서, 법인소유 및 규제 소유 정의에서, 그리고 특정 선물파생상품 거래에 있어 인허가나 기타 규제당국이나 법인 동의 없이는 초과할 수 없는 계열 수익자들의 총 투자액이 제한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골드만삭스, 당해 투자신탁 또는 기타 고객/GS계좌가 불이익을

받거나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총 소유한도액에 도달하거나 특정 거래를 이행하는 경우, 고객(당해 투자신탁 포함)을 대리하여 투자자산을 매수, 처분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거나 사업 거래에 착수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은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달리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투자자산은 평판위험을 야기시키거나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고객(당해 투자신탁 포함)을 대리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자신의 재량으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매수를 제한하거나 기존 투자자산의 매도하거나 달리 권리의 행사(의결권포함)를 제한하거나 한정시킬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인 및 그들 각자의 계열회사들은 각각 수시로 기타 당해 투자신탁과 유사한 투자 목적을 가진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투자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판매회사, 신탁업자, 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적절한 경우)로 행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회사들은 사업 과정에서 당해 투자신탁과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첨2]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때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의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당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	골드만삭스 글로벌리츠 증권 종류형 투지산탁 [주식형-재간접형]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40조 제4항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방법으로 부동산 및 법 시행령 제240조 제5항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권	투자신탁에 대한 이권으로서 이에 대한 권리를 포함합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신탁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을 말합니다.
영업일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당해 투자신탁과 관련하여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말합니다
재간접형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행위인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인 골드만삭스자산운용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법 제238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설립한 위원회를 말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용 어	내 용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법 시행령 제240조 제2항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240조 제2항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판매회사	당해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 명칭 :** 골드만삭스 글로벌리츠 부동산 투자신탁 [재간접형]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 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취선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 명칭 :** 골드만삭스 글로벌리츠 부동산 투자신탁 [재간접형]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